

옛글의 引用法 표준화에 대한 試論*

민현식 **

1. 머리말

학문의 역사적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는 고문헌 자료를 인용(quotation, citation)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국문학, 국어학, 국사학, 한국 철학과 같은 한국학의 역사적 연구에서 그러하거니와 우리는 한국학 연구에서 고문헌의 인용 문제의 통일을 위한 시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런 문제는 출전 문헌의 명시성을 위해서 서지적 사항이 따라야 하므로 書誌學에서 기본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기도 하지만 해당 개별 학문 분야의 실

* 본고는 '간행물 양식과 문장 부호 실태 조사 및 표준화 방안 연구'(문화체육부 1996년도 연구 보고서)에 분산되어 실린 것을 모아 부분적으로 다듬고 고쳐 안병희 교수님의 정년 퇴임에 즈음하여 頌功의 뜻으로 기고한 것이다. 필자는 본고를 준비하면서 차자법, 문법사, 서지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학문의 깊이를 보여 주신 선생님이시지만 특히 국어학의 서지적 문제를 홀로 파헤쳐 오신 先功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부디 후학들에게 계속 가르침을 주실 수 있도록 오래도록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린다.

** 숙명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정에 맞도록 다양한 경우에 맞추어 해당 전공자들의 구체적 필요에 맞는 고문헌 인용법이 확립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한국학 분야에서 그러한 인용법의 통일 문제가 생론화된 바도 없고 따라서 엄정하게 확립되어 있지도 않은 채 대학의 학파나 개인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다양한 인용법이 공존하면서도 학문적 논의가 별탈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면 통일적인 인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기도 하다. 그러나 ‘引用情報’의 正確性(accuracy)이란 관점에서도 학문 영역에서 고문헌 자료의 인용법에 대한 기본적인 통일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므로 고문헌의 인용법에 따른 제문제를 검토하여 통일된 인용 방식을 검토하여 보도록 한다.

2. 내용 인용법

일반적으로 고문헌의 인용도 일반 문헌의 인용법에 속하므로 일반적인 인용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 인용법의 유형으로 보고 있는 完全引用法(full quotation), 省略引用法(eliptic quotation), 加筆引用法(correctional quotation)의 세 가지 방법(서정수 1995:483)은 고문헌의 인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완전 인용법이란 원하는 인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고, 생략 인용법은 인용문의 일부를 생략하고 따오는 것이며, 가필 인용법은 인용문에 인용자가 가필, 첨삭, 교정하는 것이다.

2.1. 완전 인용법

완전 인용법이란 인용 부분이 원문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는 것이므로 원문의 내용을 표기법과 구두점은 말할 것도 없이 오자(wrong letter), 탈자(missing letter), 미판독자(illegible letter)까지도 그대로 적는 인용 방식이다. 따라서 고전 문헌에 대한 완전 인용법에서는 원전의 하찮은 것, 가령 점, 획 등에도 신경을 쓰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한자의 경우는 원전의 글꼴이 현대에 쓰

이지 않는 한자가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현대의 활자로 출판하다 보면 종종 원전의 글꼴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 가령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ㅏ자는 ㅏ. 우측 위에 점을 찍은 글자인데 정확한 인용이라면 원 글자를 써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의미 전달상 변하지 않는 것이기에 현대 활자로 변개한 출판을 허용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원전의 글자가 아닌 점에서는 완전 인용으로 볼 수 없다.

현대문의 경우는 인용문에 큰따옴표나 작은따옴표를 하고 다른 문장부호도 그대로 표시하듯이 고문헌의 인용도 완전 인용 부분의 앞뒤에 따옴표를 하여 구별함이 당연한데 인용 원문을 본문의 행과 달리하여 본문 부분과 구별시켜 배치한다면 별도의 따옴표는 할 필요가 없다.

대체로 고문헌의 원문에서 짧은 내용을 인용할 경우는 본문을 전개하면서 본문의 행 속에 삽입하여 큰따옴표나 작은따옴표를 하여 인용하지만 원문이 1,2 행 이상으로 길어지거나 독립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으면 행을 바꾸고 독립시켜 별도의 문단 속에 독립 인용을 한다. 다음 (1ㄱ)은 삽입 인용을 한 것이고 (1ㄴ)은 같은 내용을 두고 독립 인용을 한 예이다. 예문은 안병희(1992:34)에서 따온 것이다.

(1ㄱ)삽입 인용: 짧은 원문 인용시 본문 속에 따옴표로 인용

…진작부터 알려진 중간본에서 ‘쉼못 아니면 어느 길해 다시 보수봉리’(월석8, 82)와 같이 잘못된 것이 10여 년 전에 발견된 원간본에서는 ‘봉’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

(1ㄴ)독립 인용: 긴 원문 인용시 행을 바꿔 독립하여 인용

…진작부터 알려진 중간본에서

쉼못 아니면 어느 길해 다시 보수봉리(월석8, 82)

와 같이 잘못된 것이 10여 년 전에 발견된 원간본에서는 ‘봉’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

현행 문장부호 규정에서는 대화문이나 비대화문의 인용은 큰따옴표로 하고 작은따옴표는 사용하지 않으며 단지 작은따옴표는 마음속으로 한 말이나 인용문 속의 인용문을 인용할 때에만 쓰게 되어 있다. 이를 고전문의 인용에도 적용한다면 대화문이나 비대화문이나 큰따옴표로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대개의 일반 문장의 인용은 큰따옴표뿐만 아니라 작은따옴표의 사용도 서구에서는 상당히 관용화된 것이 현실이며(특히 언어학이나 철학, CMS¹⁾ 1993:365) 이는 우리의 학계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위 1 그 예 참고). 아마도 비대화문의 인용에서 작은따옴표를 쓰는 경향이 중대함은 대화문 인용에 큰따옴표를 쓰다 보니 비대화문의 인용은 작은따옴표로 차별하여 표시함으로써 대화문이 아니라는 뜻을 암시하려는 의도가 나타난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학문 영역상 관례적으로 용어나 짧은 문장의 인용시 작은따옴표를 쓰는 관례가 있는 경우도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원칙적으로는 인용법의 통일성을 위해서는 큰따옴표로 통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완전 인용을 할 때는 誤字, 脱字, 未判讀字들을 원문 그대로 제시해야 하는데 영문 인용에서는 원문의 오자 옆에 ‘원문 그대로’(so, thus, in this manner)라는 뜻의 [Sic]라는 표시를 하거나(CMS 1993 : 378) 우리말로 된 [원문 그대로]라는 표시를 하여 원문 그대로임을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한다. 그런데 국내에서 고전 문헌을 인용할 때도 오자 옆에 이런 표시를 쓸 수 있겠지만 실제는 문제 어구에 밑줄이나 방점 따위로 표시하고 논의를 진행하면 되므로 [Sic]가 쓰이는 경우가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고문헌을 주로 다룬 논저에서는 당연히 원전 그대로의 인용이 전제되기에 새삼 일일이 그런 기호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호가 옛글이 현대문과 뒤섞여 인용될 경우에는 옛글을 현대문과 구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점도 있다고 하겠다.

물론 논의의 성격상 원문의 오자 옆에 []표를 하고 ['~'은 '~'의 오자] 또는 ['~'의 오자]처럼 밝힐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경우라면 논저의 성격상 그렇게 원문 교감(校讎)을 보이면서 인용하겠다는 사실을 미리 밝혀 주어야 할 것이다.

1) CMS는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1962, 1993)에서 발행하는 The Chicago Manual of Style(14th edition)을 가리킨다.

탈자의 경우는 ‘한글 맞춤법’ 규정의 부록에 나오는 문장부호 규정에 따른다면 ‘빠짐표’인 □□□표를 써야 할 것인데 서구에서는 그런 탈자의 경우도 [] 표로 표시하여 [][][]처럼 표시한다(CMS 1993:377 참고). 따라서 우리의 고문헌 인용의 경우도 탈자는 컴퓨터 조판상 특수 문자로 불러내야 하는 □ 표보다는 쉽게 자판에서 불러낼 수 있는 [] 표가 경제적이므로 [] 표의 사용을 권장할 만하다. 이렇게 된다면 현행 문장부호 규정에서 빠짐표 □ 은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대신 대괄호 [] 항목의 규정에는 빠짐표 기능을 추가 설정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 표와 [] 표를 모두 빠짐표 기능을 위한 복수 부호로 용인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가급적 부호 통일의 목표가 다양성에 따른 혼란의 비능률을 제거하고 국제화 시대에 국제적 관례를 따를 필요도 크다는 점에서 서구에서 일반화된 것인 []를 단일 부호로 사용함이 좋을 것이다.

□ 표와 [] 표의 사용 예를 보면, 가령 慶北 英陽郡 立岩面 蓮塘 一洞에서 발견된 石佛의 造成記를 인용한 남풍현(1993)의 논문에서는 이 조성기의 탈자 표시를 다음 (2ㄱ)처럼 □ 표로 하였는데 (2ㄴ)처럼 [] 표도 쓴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2ㄱ) □紀元年己酉八月佛成文□□□節中成之…

(2ㄴ) []紀元年己酉八月佛成文[][][]節中成之…

‘한국 고전 용어 사전’(세종대왕 기념 사업회)에서는 탈자의 경우 ○○표를 쓰기도 하는데 현 문장부호 규정에서 ○○○나 ×××는 숨김표라 하여 빠짐표인 □와 구별해 쓰고 있으므로 적어도 ○○○나 ×××표는 탈자 표시에 쓰지 말아야 할 것이며 탈자 표시는 국제적 통일성을 위해서도 서구식의 []를 씀이 좋을 것이다.

한편, 탈자나 미판독자 옆에 [] 표를 하고 탈자를 보충하거나 추정 해독자를 보충하면 그러한 인용은 후술할 가필 인용 단계로 보아야 한다.

2.2. 생략 인용

생략 인용은 원문의 일부분, 가령 앞 부분이나 중간 부분이나 끝 부분을 빼고 필요한 부분만을 인용하는 것으로 이 때 생략된 부분은 줄임표(생략표, 생략점, ellipsis dots)라고 하는 ... 표를 넣어 문장 일부가 생략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이 줄임표의 위치도 사람마다 다른데 서구에서는 관례로 약간 넓은 간격으로 된 3점의 하단점으로 표시하여 마침표를 내리 세 번 찍는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한글 맞춤법'(1988)의 문장부호 규정에서 좁은 간격으로 된 6개의 가운데점 ... 을 반복하고 있어 차이가 난다. 그러나 굳이 6개씩 적을 필요도 없고 현행 컴퓨터 자판에서는 이런 가운데점 6점을 특수문자 부호에서 불러내야 하므로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서구처럼 마침표 점을 3번 반복해 찍는 3점 방식이 훨씬 간결하다(CMS 1993:372 참고). 그런데 줄임표 앞 뒤로 대괄호인 []표를 하는 경우도 있다. 안병희(1992-:15)에서 이러한 예를 쓰고 있다. 다음은 '소학'의 한 원문 구절에 대한 두 번역문의 예를 비교한 것으로서 그대로 옮겨 온다.

원문: 見常[……], 見至尊.(소학)

번역: 님금의 뵈소아 [……], 님금의 뵈소아 (번소 IX. 43b, 44a)

: 常의 뵈오아 [……], 至尊의 뵈으와 (소언 VI. 40a, 40b)

위에서 []를 함으로써 생략 부분이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는데 굳이 이 부호를 씀을 강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물론 서구에서도 단순히 생략의 3점만 찍지 [] 표를 쓰지는 않는다.

그런데 생략의 줄임표를 하면서 '……(중략)……, (전략)……; ……(후략), ……(하략)'처럼 '전략, 중략, 후략, 하략' 따위를 덧붙이기도 하는데 ... 표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역시 이런 말을 굳이 쓸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서구에서도 그런 말은 쓰지 않고 ... 표만 보인다.

2.3. 가필 인용

가필 인용은 인용자가 필요에 따라 인용문에다 다소의 가필을 하는 것으로

그 양상은 다양하다. 우선 원문을 1차적으로 그대로 완전 인용한 후 2차적으로 인용자가 필요에 따라 각종 부호를 첨가하여 제시하여 놓은 경우가 있다. 이는 우리가 고문헌 자료를 인용할 때는 논의의 전개상 글자나 기호의 가필이 따르게 되므로 여러 기호들이 이용될 수밖에 없다. 가령 중국의 古代 帳籍을 연구하고 자료집을 만든 池田溫(1979)에서는 여러 범례 기호들을 사용하였으니 즉, 마멸, 일부 찬존, 판독 곤란 글자는 □□□ 표, 탈자이거나 해어진 부분은 [] 표를 썼으며 판독하거나 보충한 글자는 사각형 □ 표 안에 글자를 적었고 추측한 해독은 불완전하므로 () 표 안에 추측한 글자를 적어 넣었다. 또한 본문 필체와 다른 글씨가 쓰인 경우는 「 」 표, 고문서에서 붉게 쓴 글자가 있는 부분은 『 』 표, 朱印이 있는 경우는 ◎ 표, 글자를 쓴 후 말소한 문자는 “ ” 표를 한다거나 하여 여러 다양한 기호 사용을 해서 원문 인용의 사실성을 높였다(허홍식 1988:56 재인용). 그런데 이러한 여러 부호의 사용은 인용자가 범례의 事前 提示를 통해 철저히 미리 밝혀 놓아야 할 사항이다. 대개의 국어 사전이나 고어 사전 및 고전 용어 사전에서는 이런 범례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원전을 인용자가 주관적 견해에 따라 첨삭 수정하여 제시하는 인용도 가필 인용에 듈다. 대표적인 것이 廣開土大王 碑文의 여러 탁본을 둘러싸고 남북한 학자, 일본, 중국 학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미판독 글자에 대한 해독문에서 이런 가필 인용을 볼 수 있다. 의견이 분분한 미판독 글자를 주관적으로 해독하는 과정에서 이런 가필 인용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유형의 또 다른 예로는 鄭歌의 미판독 글자나 탈자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논의에서도 나타난다. 김완진(1980)에서 행해진 향가에 대한 새로운 해독 과정에서 미판독자나 탈자에 대한 보충은 원전에 대한 해석론에서는 필연적인바 전형적인 가필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처럼 김완진(1980)의 재구한 텍스트는 결과적으로 가필 인용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필 인용의 텍스트를 누군가 다시 재인용할 때는 종종 원전이 그러한 양 오해를 줄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이런 식의 인용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가필 사항이 덧붙임말로 첨부되어야 한다.

그 밖에 한문 원문을 현대인이 알아보기 쉽게 띄어쓴 인용이나 한문 원문을 번역하는 인용, 그리고 붙여쓰기로 된 한글 고문을 원문 표기로 띄어 쓴 인용이나 현대문으로 번역한 인용도 '넓은 의미에서 모두 가필 인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로 이들 역시 그런 띄어쓰기가 인용자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점이라든가 인용문이 번역문임을 알리는 말을 첨가하여야 한다.

전체적으로 인용시 첨삭, 수정과 같은 가필이 있었으면 그 사실을 가필이 이루어진 인용어구에 밑줄이나 윗점(또는 방점)을 표시하거나 바로 해당 인용어구 뒤 또는 전체 인용문 끝에 []을 베풀고 원전의 내용을 밝혀 주어 가필이 이루어졌음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다음은 그러한 예를 보여 준다. 용례는 안병희 (1992:33)에 따른다.

- (3-1) 鮮有는 뜯비리 잇디 아니타 ㅎ논 뜬디라(중간본 월인석보 서 2-2)[윗점 필자]
- (3-2) 鮮有는 뜯비리 잇디 아니타 ㅎ논 뜬디라(중간본 월인석보 서 2-2)[밑줄 필자]
- (3-3) 鮮有는 뜯비리[원간본에는 ‘뜻바리’] 잇디 아니타 ㅎ논 뜬디라(중간본 월인석보 서 2-2. []는 필자 보충)

한편, 가필 인용시는 필연적으로 誤讀의 위험이 따르는바 본인의 誤讀 가능성이 늘 있다는 점을 깨닫고 判讀 不可能한 글자인지 脱字 부분인지 등의 여부를 밝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때로는 1차 원전이 명확한 글자로 나왔더라도 해독자가 옮긴 텍스트에서 誤讀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본인은 완전 인용으로 알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오독이 나타난 ‘무의도적 가필 인용’이 된 것이다. 대부분의 가필 인용이 ‘의도적 가필 인용’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무의도적 가필 인용의 예로 訓民正音 解例本 원문을 전문 소개한 최현배(1940, 1976:)의 텍스트에 나타난 한 예를 들 수 있다. 최현배(1940, 1976: 5)에는 制字解 앞 부분인 ‘…故人之聲音皆有陰陽之理顧人不察耳…’에서 ‘顧’(돌아볼 고)를 ‘頤’(고요할 와)로 해독하여 수록해 놓았다. 해례본의 ‘顧’자의 필체가 ‘頤’자의 필체와 비슷하여 오독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대의 해례본 주석서들은 모두 ‘顧’자로 바르게 보고 주석하고 있어 비교가 된다.

2.4. 협주

고문헌에서는 협주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협주는 원전에서 본문 글자보다 작은 활자로 해서 두 줄로 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협주를 본문과 함께 인용할 때는 본문 모습처럼 살려 두 줄로 배열하는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컴퓨터에 의한 문서 편집시 협주 부분을 본문 1행 속에서 두 줄로 보이려면 본문 글자를 처음부터 크게 해야 협주의 글자를 어느 정도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편의상 다음 예만 협주를 잘 보이도록 큰 글자로 예시하여 본다.

(4-1) [...] 중국이 헌금(海禁) 비단의 외국 사용을 금하는 법이라 을 계획으로 봉해 각국으로 더브러 통상 한국에 외국 상품을 더 빚는 법이라 더니 [...] 후에 천해 다소 헌금 군수를 부르며 용망 있는 이를 쇼모(召募) 한국에 외국 상품을 더 빚는 법이라 홀식 비로소 물화를 외목 한국에 외국 상품을 더 빚는 법이라 츄리법(抽釐法) 한국에 외국 상품을 더 빚는 법이라 을 창지(創開) 향아 군량에 조리(資賴) 향게 향니, 대여 양고는 흥판 한국에 외국 상품을 더 빚는 법이라 향기로 싱애하는지라 [...]. (易言, 권 1 : 10-1, 1)

그런데 이런 방식은 컴퓨터 편집상 번거로운 것이 사실이므로 본문 행의 글자 크기와 같은 글자 크기로 협주도 [] 안에 넣어 구별하는 것이 간편하다. 이 때 []는 협주임을 인용문 앞이나 뒤에 알려 주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위 예도 협주 부분만 [] 부분으로 해서 표시하여도 되는 것이다(예는 생략). 다음 예도 석보상절의 한 예로 역시 [] 부분이 협주임을 뜻한다.

(4-2) 즉자히入입定명 한국에 외국 상품을 더 빚는 법이라 향아펴엣던발홀구필쓰시예[셀론주를 나르니라]迦 강毗��羅 왕國에가아(석보상절 6: 2-1. []는 협주)

이처럼 협주 팔호는 대팔호 []을 쓰는 경우가 학계에서 상당히 관례화되었으므로 무난하다. 실제로 협주를 중팔호 () 표로 하는 경우를 찾아 보기는 어려우며 소팔호 ()으로 하는 경우도 어떤 성분의 생략 표시로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적합하여 거의 쓰이지 않는다. 혹 [] 대신 【】 표를 쓰자는 주장도 가능한데 이는 고문헌에서 협주를 현대의 【】 표와 비슷한 모양인 黑魚尾 표시로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 표를 쓴다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楞嚴經

‘諺解’ 같은 경우는 언해문과 구별하고자 협주가 시작되고 끝나는 곳에 【】 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표도 컴퓨터 자판에서는 특수문자로 불러내야 하므로 역시 번거로우므로 인쇄 문화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대괄호 [] 표가 더 실용적일 것이다. ‘고전용어사전’(1991)의 경우는 협주 표시를 < >로 묶기도 하였는데 시각적으로 좌우에 돌출한 모습이라 불안정한 느낌을 주며 널리 쓰이고 있지도 않아 바람직하지 않다.

3. 출전 표시법

고문헌의 인용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出典 표시이다. 즉 고문헌의 출전 표시를 정확히 적을 수 있어야 하는데 대개의 논문의 출전 표시를 보면 출전 인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 부실한 경우는 원전이 초간본이냐 중간본이냐와 같은 刊印本 표시의 불명확성에서 기인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인용 문헌의 초간본, 중간본 여부를 미리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그것을 표시하는 것을 무시하고 인용하다 보면 독자가 오해하는 수가 생겨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가령 15세기의 초간본이 부전하는 ‘內訓’에 대하여 1736년에 나온 ‘御製 内訓’은 譚文의 어휘나 문체가 딴판이므로 구별되는데 ‘어제 내훈’을 15세기 자료로 착각하여 다루면서 인용한다면 독자는 인용된 ‘어제 내훈’의 내용을 초간본 ‘내훈’의 내용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간년 표시와 완전한 書名을 밝혀 인용에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고문헌들은 형태서지학에서 말하는 刊印本의 종류가 다양하여 필요에 따라 그것을 밝혀 주어야 할 것이다. 가령, 간행 시기에 따라 初刊本(=原刊本, 原板本, 祖板本)과 重刊本(=重刻本, 重影本)으로 나뉘며 인출시기에 따라 初印本(=初刷本)과 後印本으로 나뉘는 등 형태 서지학상의 용어는 다양하다(천혜봉 1991 참고). 따라서 정확한 문헌 판단과 그에 따른 인용이 되어야 인용의 정확성이 유지될 것이다. 예컨대 (3)의 용례에서 ‘꽃비리’는 중간본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꽃바리’의 오자인 것을 원간본이 발견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실제로 ‘고어사전’이나 ‘이조어사전’에는 ‘풋비리’가 나오는데 이는 오자가 들어 있는 표제어가 사전의 표제어로 잘못 옮겨진 경우다. 다행히 근자에 나온 한글 학회의 『우리말 큰사전』 제4권(고어편)에는 ‘풋바리’가 제대로 실렸고 ‘풋비리’는 실리지 않았다.

고문헌의 출전 표시에서는 書名, 卷次, 張次 표시도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書名의 문제가 가장 크다.²⁾ 한 예로 『新傳煮取焰燐方諺解』의 ‘燐’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나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권13에는 ‘硝’로 잘못 기록되어 書名 자체가 ‘신전자취염초방언해’로 오독되는 경우도 있다. 이 항목 집필자인 홍윤표 교수의 다른 논저들에는 바르게 나온 것으로 보아 다른 교정자들의 착오로 보인다. 안병희(1982, 1992-:80-82)에 따르면 고문헌들에서 書名은 여러 곳에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학술적으로 통일된 書名이 가장 절실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안병희(1982, 1992-:80-82)에서는 안병희 교수 가 변별하고자 명명한 대표 書名이 제시되어 있다. 본 논의도 이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학계에서도 안병희 교수가 제안한 대표 서명 방식이 거의 완벽한 방식이라 가급적 널리 사용도록 권장할 만하다. 이처럼 고문헌의 서명이 여러 가지가 쓰이게 된 이유는 고문헌들의 서명이 다음과 같이 동일한 책이라 해도 책의 여러 곳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책 이름이 나타나는 곳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이하 안병희 1992-:68-87 참고).

(1) 卷頭 書名: 內題, 卷首題, 卷端題라고도 한다. 書誌學에서는 보통 이것을 代表 書名으로 한다.

(2) 卷末 書名: 裏題, 尾題라고도 한다. ‘四法語’의 권두 서명은 ‘法語’이고 권말 서명은 ‘四法語’로 상이하다. ‘경민편’도 권두 서명은 ‘경민편’이나 권말 서명은 ‘중간 경민편’이다.

(3) 目錄, 凡例 書名: 목록과 범례에 나타나는 서명으로 ‘번역노절대, 번역박통사’의 경우는 이것에서 얻은 이름이다.

2) 중세나 근대의 문헌에서 書名, 張次 등의 문제를 다룬 것으로 국어학 영역에서는 안병희 (1982→1992-:재록)가 대표적이다. 그 외 오자, 오독 문제를 다룬 안병희(1989), 중세 문헌을 종합한 안병희(1979), 근대 자료를 다룬 안병희(1990), 홍윤표(1993, 1994)를 들 수 있다. 안병희 교수의 이들 논문은 안병희(1993-:재록)에 재록되어 있다.

- (4) 序文, 跋文 書名: 서문과跋文(跋文)은 서문과 밑문 첫머리에 나오는 이름이다. 가령 '杜詩序' 같은 예가 그러하다.
- (5) 版心 書名: 版心題라고도 하는데 판심의 上下魚尾 사이에 쓰여진 이름이다. '월인석보, 금강경삼가해, 사성통해' 등이 판심제이다.
- (6) 外題(表紙) 書名: 표지 바깥에 쓰인 서명이다. '佛頂心經'의 경우 판 이름으로 '觀音經'이란 이름이 표제에 전한다. 가령 주시경의 '대한국어문법'도 外題는 '국문강의'이므로 이것이 대표 서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 (7) 書根題: 책을 세웠을 때 바닥에 닿는 부분인 書根에 쓰인 이름이다.
- (8) 內賜記 書名: 책을 관료나 기관에 배포할 때에 앞 표지 안쪽에 쓴 書名이다.

이상과 같은 서명 문제를 밝힌 안병희 교수는 대체로 卷頭 書名이 대표 서명으로 쓰여야 하지만 책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같은 제목의 한문본에 대해 언해서와 구결서가 따로 존재하므로 '언해'와 '구결'이란 이름을 붙여 주는 것이 식별에 좋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확정된 서명, 즉 '갖은 이름'(具稱)은 다시 줄어진 약칭, 즉 '줄인 이름'(略稱, 略號)이 쓰이기도 하는데 따로 '딴 이름'(別稱)을 가진 경우도 있다(안병희 1992:67). 그러나 가급적 '딴 이름'의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갖은 이름과 줄인 이름만을 원칙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다루도록 한다.

張次 및 面次에 대해서는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의 고어편 '일러두기' 용례와 같은 것이 참고된다. 가령 고문헌은 두 面이 한 張을 가리키므로 숫자가 적힌 책은 물론이거니와 張數가 적히지 않은 필사본의 경우라도 추정된 張數로 보기글을 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용면의 표시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이 로마자, 아라비아 숫자, 한자 사용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어 역시 통일이 필요하다.

석보상절 VI권 21b	석보상절 6권 21b	석보상절 六권 二十一b
석보상절 VI권 21-	석보상절 6권 21-	석보상절 六권 二十一-
석보상절 권VI 21b	석보상절 권6 21b	석보상절 권六 二十一b
석보상절 권VI 21-	석보상절 권6 21-	석보상절 권六 二十一-
석보상절 VI, 21b	석보상절 6, 21b	석보상절 六, 二十一b

석보상절 VI, 21-	석보상절 6, 21-	석보상절 六, 二十一-
석보상절 VI:21b	석보상절 6:21b	석보상절 六:二十一b
석보상절 VI:21-	석보상절 6:21-	석보상절 六:二十一-
:	:	:

卷次는 로마 숫자 I, II, III ... 나 漢字 숫자 一, 二, 三 ... 따위로 적는 경우도 많으나 아라비아 숫자로 적음이 편리하다. 張次는 대체로 아라비아 숫자로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 1장이 양면으로 된 面次는 로마자 a,b로 적는 것이 널리 퍼졌으나 한글 ㄱ, ㄴ으로 적는 경우도 상당히 퍼지고 있고 또 우리 글자 사용을 권한다는 점에서 한글 적기를 권하도록 한다.

특히 로마 숫자나 한자 숫자를 불러 내려면 컴퓨터 문서 편집시에는 번거로운 점이 있어 가급적 卷次나 張次를 아라비아 숫자로 모두 통일하고 面次는 로마자 a,b 방식보다는 한글 자모 ㄱ, ㄴ으로 함이 편리할 것이다.

또한 卷次 표시의 경우 '권'자를 넣어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 되 이를 생략하고 쌍점(:)을 표시하는 경우도 허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의 여러 예 중에서 '석보상절 6권 21-'의 방식이 바람직하며' 石보상절 6 : 21-'처럼 : 표를 사용할 수 있다.

유창돈의 『이조어사전』(1964)에서는 卷次는 한문 숫자, 張次는 아라비아 숫자를 써서 가령 '석보상절 6권 21장'의 표시를 '석 六 21'로 하여 : 표나 ㄱ, ㄴ 구분과 같은 쪽수 구별도 하지 않았다.

남광우의 『고어사전』(1960)은 '初杜解 10:46'처럼 張次를 모두 아라비아 숫자로 통일하고 : 표를 사용하였으나 역시 같은 장차 내의 쪽수는 구별하지 않았다.

용비어천가나 월인천강지곡과 같은 문현들은 악장마다 고유한 번호를 갖고 있으니 이 번호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도록 하는 것도 이해에 편리하다. 가령 '용비어천가 2장'은 '용가 2'로, '월인천강지곡 20장'은 '월천 20'처럼 적는 것이다.

그 밖에 인용의 필요에 따라서는 인용할 때에 같은 쪽수내의 앞쪽, 뒤쪽 부분도 다음 예처럼 '가, 나'로 친절히 안내해 줄 수 있을 것이고 더 정확하게 행을 밝혀 주는 방법도 가능하다.

(5-1) ‘삼국사기 권 제1 제6장 앞쪽 ~ 제7장 뒤쪽 신라본기 제1 유리 이사금’까지 인용할 때의 출전 표시 => 삼국사기 1 : 6 가 ~ 7 나 신라 1 유리 이사금

(5-2) ‘초간본 두시언해 7권 3-쪽 2행을 인용할 때의 출전 표시 => 두초 7:3-2

위 (5-1)에서 ‘가,나’는 한 쪽 내부에서 앞, 뒤쪽을 구별한 것으로 독자에게 편리함을 준다.

4. 고문헌 약칭(약호)법 – 국어학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고문헌의 출전을 표시하는 방법은 원 문헌 이름 그대로 인용하는 수도 있고 略號를 인용하는 수도 있다. 논저들에서 고문헌의 원명을 그대로 쓰는 경우로는 가령 이기문 교수의 『국어사개설』(1961, 1972)이나 고영근 교수의 『표준중세 국어문법론』(1987)이 대체로 원전 이름을 원 제목 그대로 밝혀 놓고 있어 약칭이 언제나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기문 교수의 『국어사개설』에서는 원칙적으로 서명을 다 밝혀 적고 극히 일부 문헌 자료, 가령 ‘禪’宋永嘉集‘解’를 ‘永嘉集’으로 줄이는 따위의 예만 보인다. 그러나 많은 논저들이 약칭을 사용하고 있다.

원 문헌 이름을 인용하려면 전술한 대로 고문헌의 정확한 書名이 확정되어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약칭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서명이 확정되어 도 어떤 식으로 약호를 정하여 인용할 것인지가 문제로 대두된다.

현재 한국학계에서 대표적인 분야인 국어학, 국문학, 국사학, 한국철학 분야에서는 전공별로 통일된 문헌명 표기법이 약속된 것이 없고 학계 상호간에 그런 통일을 논의한 적이 별로 없다. 따라서 전공 분야별로 각 문헌에 대해 통일된 관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별로 전공 분야별로 다양한 차이를 보여 준다.

학계별로 어떤 문헌의 약호나 인용 방식을 정하려는 노력은 없고 개인별 논저 안에서 문헌의 원명이나 약호명을 제시하여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고서의 인용에서는 적어도 본론에 앞서 또는 인용 직후에 원전의 서지 사항을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는 서지적 정보를 논저 안에서 충실히 밝혀 놓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활판본이나 목판본의 문제나 초간, 중간 등의 서지적 사항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내용을 예시한다거나 하여 독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역사적 연구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가령 유명한 문헌 자료의 하나인 '농가월령가'의 경우 다음과 같이 10여 종의 이본이 있는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나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농가월령가를 설명하면서 총 구절 수가 1032구라 하였는데 어느 이본을 근거로 한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유열(북한 표기: 류열)의 주해본을 근거로 한 듯한데 백과사전이라면 가장 오래된 사본인 정인보본이나 이탁본을 따라서 1034구로 해야 옳을 것이다(졸고 1996 참고).

異本	鄭寅普本	李鐸本	誠齋本	光武本	王室本	유열주해본	박성의 주해본
소장자	姜信沆	李相寶	丁海昌	李相寶	秦東赫	김형규주해본	
총 句數	1034	1034	1008	1030	1036	1032	1036

이처럼 '농가월령가'의 경우만 보아도 이본에 대하여 이본의 명칭을 어떻게 정하고 인용하느냐부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문헌에 대한 정확한 서지 사항의 명시는 서지학적 판정을 통해 명확히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계에서는 인용 고문헌에 대한 서명의 확정과 이본 명칭에 대한 확정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어학계에서는 이미 안병희(1982, 1992 등)에서 이런 논의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그런 기초 작업을 하여 학계에 좋은 안내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도 안병희(1982, 1992 등)의 여러 논의들에 기대어 본 장에서는 특히 인용 문헌들의 약호 통일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약칭의 통일 작업은 국어학 분야의 고문헌을 대상으로 하여 정리하였다.

먼저 현재 이용되는 고어사전이라든가 중세어 연구자들의 연구 논저들을 보면 문헌 원명과 약호명이 상이한 것을 많이 보게 된다. 문헌 약호는 고어 사전

들과 일반 국어 대사전들에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으니 《금성판 국어대사전》,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과 같은 일반 국어대사전이라든가,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1992) 등에도 나타난다. 물론 수록 문헌의 성격은 사전들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안병희 교수(이하 '안')는 안병희(1992:1)에서 가장 상세히 국어사의 고문헌 처리 문제를 다루었으며 書名 문제의 통일 문제를 처음 거론하고 시안까지 제시하였다. 또한 주요 문헌의 약호는 안병희(1992:6-7)에서 보이고 있는데 모두 2음절어로 약호를 통일하여 제시하고 있어 개인 논저에서의 典範으로 삼을 만하다.

허웅 교수(이하 '허')는 허웅(1975:21-22)에서 일부의 주요 문헌들에 대해서만 약호를 제시하고 있다.

이익섭 교수(이하 '익')는 이익섭(1992:63-66)에서 국어 표기법 논의를 하면서 여러 문헌을 인용하였는데 제시한 약호를 보면 15세기 문헌에 대해서는 1음절어 약호가 많고 16세기부터는 2음절어 약호 위주이며 '十九史, 女四書'처럼 일부에 3음절어 약호가 보인다.

홍윤표 교수(이하 '홍')는 홍윤표(1994:12-18)에서 근대 국어 문헌 위주로 약호를 예시하고 있는데 가급적 이본까지 반영하는 약호 표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전의 경우는 남광우 교수의 《고어사전》(1960)(이하 '남')이 범례에 약호를 보여 주는데 약호는 2,3,4음절 등 여러 가지에 걸쳐 음절수의 통일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4,5 음절의 고문헌의 원명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많다.

유창돈(이하 '유')의 《이조어사전》(1964)은 書名에서 '언해'가 붙은 것을 1음절어로 한 경우가 많은데 '가례언해'의 경우는 2음절인 '가언'으로 하여 일관성을 없다. '유'에는 범례의 약호에 159개의 문헌을 예시하였는데 그 사전 뒤의 문헌 해제에서는 이본들의 설명을 비롯하여 범례보다는 좀 더 많은 예를 들고 있다. 그런데 앞 범례에 나온 문헌이 뒤에 설명되지 않은 예가 있는가 하면(가령, 청구야담, 청구가요, 행용이문 등) 뒤의 해제에 나온 문헌의 책명과 약호가 앞의 범례에 실리지 않은 것도 많다(가령, 신증 유합, 胎教新記謬解, 太上感應篇圖說謬解, 閩義昭鑑謬解, 七人萬法 등).

‘한글학회’(이하 ‘한’)의 《우리말 큰사전》(1991) 제4권 ‘고어편’에서는 초간본, 중간본을 흥윤표 교수의 문헌 표시처럼 비교적 구별하려고 했는데 그 약호 표시에서는 ‘병학-초, 병학-중’처럼 초간본까지 밝힌 것이 있는가 하면 ‘석보, 석보-중’처럼 중간본만 밝힌 것이 있어 일관되지 않다.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 1, 2(1992, 이하 ‘조’)의 경우 제2권의 부록인 ‘고어’편에서 150개 문헌을 예시하였는데 ‘역어류해’를 ‘역어류’로, ‘로결대언해’를 ‘로결언’으로 적는 등 3음절로 된 약호가 남한의 사전들보다는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월인석보, 월인천강지곡’은 ‘월·석, 월·천’으로 하여 가운데점을 넣은 것도 특이하다. 그러나 이 가운데점이 굳이 필요한지는 의심스럽다. 다른 경우도 2음절이면서 그런 점이 없이도 약호 기능을 충실히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사전은 《‘두시》》중, 1:16’처럼 북한 고유의 인용 부호 《 》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인데 張次 표시의 경계로 : 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와 대체로 같은 모습이다.

북한의 ‘류렬’도 자신의 저서 ‘조선어력사’에서 국어사 자료의 약호 목록을 제시했는데 ‘조선말 대사전’과 거의 같다.

북한의 약호 자료로는 ‘중세어사전’(김영황 편, 1993)도 80여개의 문헌 약호를 보여 주어 참고할 수 있는데 조선말 대사전과는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다른 것도 꽤 있어 북한에서도 약호 방식은 통일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조선말 대사전(1992)	중세어사전(1993)	
경신록언해	경신	경신록
금강경언해	금강언	금강
두창경험방	두창경	두창방
번역박통사	박통사	-
박통사언해	박통언	박통사
용비어천가	룡비	룡가
월인천강지곡	월·천	월인

한편 남북한간에는 작품이나 비문 등의 이름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 가령 다음의 향가 작품 제목의 차이가 그런 예이다. 따라서 이들은 인용시에도 남북간

에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남	북
讚耆婆郎歌	기파랑노래
祭亡妹歌	누이노래
兜率歌	도솔노래
安民歌	백성노래
怨歌	잣나무노래
獻花歌	꽃노래
禮敬諸佛歌	부처노래
悼二將歌	두장수노래

따라서 이런 작품의 이름도 앞으로 통일해야 할 과제의 하나이다.

이상에서 보다시피 書名의 확정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 밖에 서로 혼동하기 쉬운 예로 다음 예도 들 수 있다. 즉 '노결대언해 중간본'과 '중간 노결대언해'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서명의 확정은 물론 약호의 변별도 중요하다. '번역노결대, 번역박통사'를 '안'은 '번노, 번박'으로 했는데, '한'은 '노번, 박번'으로 정반대 약호를 보여 대조적이다. '유'에서는 당시 '이조어사전'이 나오던 시기에 '번역노결대'가 아직 미공개되어서 반영되지 않았다. '유'는 초간인 '번역박통사'와 중간인 '박통사언해'를 '朴通事諺解初刊'과 '朴通事諺解重刊'식으로 서명을 불렀다. 그러나 자료로 인용되지 못한 자료라 하더라도 문헌에 대한 지침명으로는 약호를 확립해 둘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초간, 중간 표시나 목판본, 활판본 표시 그리고 발간지별 표시가 부가될 필요가 있다. 여러 이본을 동시에 대비하면서 논할수록 그런 표시는 명확히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1) 訓蒙字會(초간) : 자회

訓蒙字會(중간) : 자회중

예2) 馬經抄集諺解(목판본) : 마경목

馬經抄集諺解(활판본) : 마경활

예3) 警民編諺解(개간본의 상주, 전주, 남원 복각본) : 경민신증(상주), 경민신증

(전주), 경민신중(남원)

그러나 여러 이본 중 대표적인 어느 하나만 인용하는 경우라면 판본 표시는 따로 설명을 베풀고 약호 표시는 책명의 약호만 제시하면 될 것이다.

논자들마다 서지적 해석이 달라 혼란을 주는 예로 ‘**警民編諺解**’를 들 수 있다. ‘경민편언해’는 1519년(중종 14)에 나온 원간본은 부전하는데 동경교육대 소장본으로 경상 감사 許疇이 1579년(선조 12)에 진주에서 간행한 중간본과 李厚源이 1658년(효종 9)에 새로 언해가 없이 구결만 달린 이인영씨 소장본이 있고 개간본의 이본으로는 1730년(영조 6)에 상주에서 나온 것과 1748년(영조 24)에 남원과 전주에서 나온 것이다(안병희 1992:300-9).

그런데 대개의 사전이나 논저들은 경민편언해를 인용하면서 그냥 ‘경민, 경민편’이라고 하여 원간본인 양 오해를 줄 수 있다. 한글 학회 사전(1991)의 경우는 원간본을 ‘경민’, 동경교대본을 중간본이라 하여 ‘경민-종’이라 하고, 개간본은 신역본이라 하여 ‘경민-신’으로 하였으며 신역본의 상주, 남원, 전주 지역의 복각본들을 ‘경민-신중’으로 하여 구별을 시도하였다. 흥윤표(1994:7)에서는 안병희 교수가 중간본이라 한 동경교대본을 ‘**警民동경대본**’이라 약칭하고 이와 별도로 ‘경민편언해 중간본’을 따로 언급하여 ‘**警民重**’으로 약칭함으로써 동경교대본과 또 다른 여러 중간본들을 구별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도록 한다.

예) **警民編諺解**(원간본은 부전) : 경민

警民編諺解(중간본=동경교대본) : 경민종 또는 경민동

警民編諺解(신역본, 개간본) : 경민신

警民編諺解(개간본의 상주, 전주, 남원 복각본) : 경민신중(상주), 경민신중

(전주), 경민신중(남원)

이처럼 이본들에 대해서는 논자들마다 표기나 용어가 달라 앞으로 이에 대한 표준화 논의가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흐름을 통해 우리는 대략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약호의 시안을 마련

해 보았다.

(1) 약호는 2음절 방식을 이상적인 것으로 한다. 가령 ‘몽’이라 하면 ‘몽어유해, 몽산화상, 몽어노결대’ 등 여러 가지가 연상될 수 있기 때문에 2음절 약호로 하여 ‘몽해, 몽산, 몽노’로 변별케 함이 좋다.

(2) 이본 표시라든가 소장자 표시를 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3음절 약호를 허용한다.

(3) 우리가 대비한 8종의 약호 대비 용례중 가장 빈도높게 쓰이는 약호는 자동적으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빈도 높은 것이 그 동안 학계에서 비교적 많이 쓰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표기는 한글 전용이 많아 한글 표기로 한 약호를 택한다.

이제 8종의 문헌에 나타난 약호의 대비 도표를 제시하고 그 약호에 대한 시안들을 최종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문헌의 배열은 가,나,다 순을 원칙으로 했으나 이본들과의 대비를 위해 부분적으로 가,나,다 순을 벗어나 뮤인 경우가 있다. *는 약호가 없음을 뜻한다. 또한 북한 《조선말 대사전》의 경우 ‘북한’에 예시하였는데 약호를 표시한 예증에 ()안에 적었거나 그냥 어깨별표 *만 표시한 것은 ‘류렬’의 《조선어역사》에서만 나오는 약호를 보인 것이다.

저자	안병희	허웅	이익섭	홍윤표	남광우	유창돈	한글학회	북한	<시안>
약호	안	허	의	홍	남	유	한	조	
표기	한글	한글	한자	혼용	한자	혼용	한글	한글	한글
歌曲原流	*	*	*	*	*	歌曲	*	*	가곡
家禮諺解	*	*	家禮	家禮	家禮解	家언	가례	가례	가례
簡易辟廡方	*	*	簡辟	*	*	簡辟	*	*	간벽
警民編諺解	*	*	*	*	警民篇	警民	*	경민	경민
(원간본 부전)									
警民編諺解									
(동경교육대학본)									
警民編諺解(重刊本)	*	*	*	警民(警民東教大本)	*	*	*	*	경민동 (=경민중)
				警民重	*	*	경민 중	*	경민중

警民編諺解(신역)	*	*	*	*	*	*	경민-신	*	경민신
警民編諺解	*	*	*	*	*	*	경민-신증	*	경민신증

(상주, 전주, 남원 중간)

‘경민편언해’는 전술한 대로 1519년(중종 14)에 나온 원간본은 부전하며 중간본이 동경교육대 소장본으로 전하고 李厚源이 1658년(효종 9)에 새로 개간한 개간본이 규장각본으로 전한다. 그리고 개간본의 이본으로는 1730년(영조 6)에 상주에서 나온 것과 1748년(영조 24)에 남원과 전주에서 나온 것이 있다(안병희 1992 : 300-9). 한글 학회 사전(1991)은 원간본을 ‘경민’, 동경교대본을 중간본이라 하여 ‘경민-중’이라 하고, 개간본은 신역본이라 하여 ‘경민-신’으로 하였으며 신역본의 상주, 남원, 전주 지역의 복각본들을 ‘경민-신증’으로 하여 구별하였다. 그런데 흥윤표(1994)는 안병희 교수가 중간본이라 한 동경교대본과 별도로 또 다른 중간본들을 구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御製警民音	*	*	*	警民音	警民音	*	*	*	경민음
敬信錄諺解	*	*	*	敬信	敬信	敬信	경신	경신	경신
鷄林類事	*	*	*	*	鷄類	*	*	계림	계림
誠初心學人文	*	*	誠初	誠初	誠初心學人文	誠初	계초	계초	계초

‘의’에서는 세 권의 책이 합본된 원명대로 ‘계초심학인문, 발심수행장, 야운자 경서’를 합본으로 뮤어 예시하고 악호만 ‘계초, 발심, 야운’으로 구별하였고 ‘유’, ‘한’은 합본의 언급 없이 세 권을 따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현전하는 異本 2종 중에 전남 송광사본(1577)은 3권 1책의 張次표시를 3권 연속으로 하였지만 경기도 용인의 瑞峯寺本은 권마다 독립시키기도 하여 따로 제시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癸丑日記	*	*	*	*	癸丑	癸丑	*	계축	계축
古今釋林	*	*	*	*	*	*	*	고금	고금
孤山遺稿	*	*	*	*	*	孤山	고산	*	고산
過化存神	*	*	過化	過化	*	*	*	*	과화

關聖帝君明聖經諺解	*	*	明聖	明聖	*	*	*	*	명성	명성
關聖帝君五倫經	*	*	*	五倫經	*	*	*	*	* 오륜경	
觀音經諺解	⇒	'불정심경'	을	가	보라.					
廣開土王陵碑	*	*	*	*	*	*	*	*	릉비*	광개
救急簡易方	구간	救急簡易方	*	救簡	救急簡易方	救간	구간	구급간	구간	
救急力諺解	구급	구급방	*	*	救急方	救力	구방	구급방	구방	

‘구급간이방’과 ‘구급방언해’를 변별하기 위해서는 ‘구급’을 약호로 같이 쓰기보다는 ‘구간’과 ‘구방’으로 변별함이 좋다. 한편 세조 때 나온 ‘구급방언해’와 선조 때 허준이 편찬한 ‘언해구급방’은 다른데 ‘한’은 ‘구급방언해’를 ‘구급방’으로 하여 다음에 나온 ‘언해구급방’과 혼동하기 쉽다. 실제 한글학회 사전에서는 ‘언해구급방’이란 표제항(2870쪽)에서 ‘언해구급방=구급방언해’라고 중대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

諺解救急方	*	*	*	*	*	救언	*	*	연구	
救荒補遺方	*	*	*	救荒補遺	救荒補	救補	구황보	*	구보	
救荒撮要	구황	*	*	*	救荒	救荒	구황촬	구황	구황	
新刊救荒撮要	*	*	*	구황	*	*	신구황	*	신구	

‘신간구황촬요’는 1554년(명종 9)에 낸 ‘구황촬요’에다 이것의 속편으로 1660년(현종 1년)에 낸 ‘구황보유방’을 합철하여 낸 1책의 목판본이다. ‘구황촬요’만 해도 1554년판, 1584년판, 1639년판, 1660년판, 1686년판의 5 가지가 있다(홍윤표 1994-7:14).

救荒撮要辟鹽方	*	*	*	*	*	*	*	*	구벽	구벽
---------	---	---	---	---	---	---	---	---	----	----

위 문헌은 ‘유’에서 해설만 나오고 약호는 없으며 ‘조선말 대사전’(1992)에만 약호가 나오는 것으로 ‘유’의 해설에 따르면 ‘구황촬요’와 ‘벽온방’을 합본한 것이라 한다.

國民小學讀本	*	*	國民	*	*	*	*	*	*	국민
國漢會語	*	*	*	國漢	*	*	*	*	*	국한
軍門贍錄	*	*	*	*	*	*	군문	군문	군문	군문
勸念要錄	*	*	*	勸念	*	*	*	*	*	권념
勸善曲	*	*	*	*	*	勸善曲	*	권선	권선	권선

'남'에는 '勸善曲'의 '善'이 잘못되어 '勸禪曲'으로 되어 있다.

閨中七友爭論記	*	*	*	*	*	*	*	규중	규중
閨閣叢書	*	*	*	閨閣	*	*	*	*	규합
金剛經三家解	금삼	금강삼가	金家	金三	金三	金삼	금삼	금강삼	금삼

'한'은 '금강경삼가해'의 서명을 '금강반야바라밀경삼가해'로 하였다.

金剛經諺解	금강	금강	金	金剛	金剛	金剛	금강	금육	금강언	금강
-------	----	----	---	----	----	----	----	----	-----	----

'한'은 '금강 반야 바라밀경 육조해'를 원책명으로 하고 약호도 '금육'으로 해서 다른 약호들과 다소 이질적이다.

禁啓贍錄	*	*	*	*	*	*	금계	금계	금계
衿陽雜錄	*	*	*	*	*	衿陽	*	*	금양
羅麗史讀	*	*	*	*	*	羅麗	*	라려	나려
南明集諺解	남명	남명	南明	南明	南明	南明	남명	남명	남명

'조'는 '남명집언해'를 '南明泉禪師繼頌'으로 하고 있고 '남'은 '證道歌南明泉禪師繼頌諺解'로 되어 있다.

內訓	*	내훈	*	內訓	내훈	내	내훈	*	내훈
御製內訓	*	*	*	御製內訓	*	*	어내훈	*	어내

'한'은 '내훈'으로 하였고 '유'는 '내훈초간', '내훈중간'으로 나누어 전자를 '내'

로 후자를 ‘內重’으로 하였다. 그런데 ‘유’는 책 뒤에 나온 해설에 따르면 일본 蓬左文庫에 전하는 봉좌문고본을 초간으로 보고 효종대부터 나온 것을 중간으로 처리했으나 안병희(1992-520)에 따르면 성종 때 나온 1475년 원간본은 전하지 않으며 봉좌문고본은 1573년 선조 때에 나온 것으로 중간본이라고 한다. 따라서 ‘유’의 자료에서 ‘내’와 ‘내중’은 초간본과 중간본의 대비 자료로 오해하기 쉬운데 실상은 모두 중간본들의 이본 자료일 뿐이다.

봉좌문고본을 초간으로 본 것은 허옹(1975:21)에서도 나타난다. ‘홍’은 1573년 본을 ‘내훈언해’로 하고 1736년본 어제내훈을 ‘어제내훈언해’로 하였다. 1736년(영조 13년)의 ‘어제내훈’은 문체나 표기 등이 달라져 완전히 딴 문헌처럼 된 것으로 앞서 나왔던 중간본들과 구별된다.

老乞人諺解 ⇒ ‘번역노걸대’를 가 보라.

盧溪集	*	*	*	*	盧溪	盧溪	노계	로계	노계
-----	---	---	---	---	----	----	----	----	----

‘한’에는 ‘노계집’을 ‘노계선생문집’으로 하였다.

勞動夜學讀本	*	*	夜學	*	*	*	*	*	야학
老朴集覽	*	*	*	老朴	*	老朴	집람	로박	노박

‘한’에서는 ‘노박집람/집람’의 두 가지를 보여 준다.

論語諺解	*	*	論語	論解	論解	論언	논해	*	논언
農家月令歌	*	*	*	*	*	農月	농령-권	농가	농가

‘농가월령가’는 여러 이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에만 ‘농가월령가(권경호 베김)’라 하여 권경호본만 제시하고 있다.

楞嚴經諺解	능엄	능엄	楞	楞嚴	楞解	능	능엄	릉엄	능엄
人東韻府群玉	*	*	*	*	大東韻玉	*	*	대동	군옥
大明律直解	*	*	*	*	*	*	대명률	직해	대명

大學諺解	*	*	大學	學解	大學	大언	대해	*	대언
독립신문	*	*	*	*	*	독립	*	*	독립
東國新續三綱行實圖									
동신	*	東國	東新	동국신속삼강	신속	동신	동국신	동신	
東國三綱行實圖	*	*	*	*	동국삼강	*	동삼	*	*
東國續三綱行實圖	*	*	*	*	*	*	동속	*	*

‘의’은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동국신속삼강행실’로 하였다. 그런데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경우 그 속에 繢附로 들어 있는 ‘東國三綱行實圖’와 ‘東國續三綱行實圖’를 위의 ‘한’에서처럼 별도의 서명으로 통용시키는 일이 있으나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안(1992:119-120)에서도 주의를 환기한 바 있다.

同文類解	*	*	*	同文	同文解	同文	동해	동문	동문
東言考略	*	*	*	*	*	東言	*	동언	동언
東醫寶鑑	*	*	*	東醫	東醫	東醫	*	*	동의
東韓譯語	*	*	*	*	*	東韓	*	동한	동한
杜詩諺解(初刊本)	두초	두언	杜	杜初	初杜解	杜초	두해-초	두시	두초
杜詩諺解(重刊本)	두중	두언중간	*	重杜	重杜解	杜重	두해-중	*	두중

‘의’은 ‘두시언해’ 초간본만 ‘두’로 언급하였으며 ‘유’는 서명을 ‘두시언해초간’, ‘두시언해중간’으로 하였고 약호는 ‘杜초’는 국한 혼용, ‘杜重’은 한자 표기로 하여 다소 혼란스럽다. ‘한’은 ‘분류두공부시/두시언해’를 공동 책명으로 하였다. ‘남’은 초간본은 ‘분류두공부시언해’, 중간본은 ‘중간본두시언해’로 書名을 정하고 약호는 ‘初杜解’, ‘重杜解’로 하였는데 ‘두시언해’와 그 약호를 또 따로 두고 있다. ‘홍’은 초간본은 ‘杜初’, 중간본은 ‘杜重’이 아닌 ‘重杜’로 하였다.

痘瘡經驗方	*	*	*	*	痘瘡方	痘經	두창방	두창경	두경
-------	---	---	---	---	-----	----	-----	-----	----

‘한’의 ‘두창방’은 다소 긴 편이다. ‘두창’으로 된 ‘두창집요’와의 변별을 위해서라면 ‘두경’이 무난하다.

馬經抄集諺解	*	*	馬經	馬經	馬解	馬언	*	마경	마경
馬經抄集諺解	*	*	*	*	*	*	마경-목	*	마경목
(목판본)									
馬經抄集諺解	*	*	*	*	*	*	마경-활	*	마경활
(활판본)									

‘의’은 판본 구별없이 ‘마경’으로 했는데 ‘유’나 ‘조’는 책명을 ‘마경언해’로 하였다. ‘한’은 ‘마경초집언해(목판본)’, ‘마경초집언해(활판본)’으로 판본을 구별하였다.

孟子諺解	*	*	孟子	孟解	孟解	孟언	맹해	맹자	맹언
明義錄諺解	*	*	明義	明義	*	明義	*	*	명의
續明義錄諺解	*	*	*	續明義	*	*	*	*	속명
明皇誠鑑諺解	*	*	*	*	*	明皇	*	*	명황
牧牛子修心訣諺解	*	*	牧	*	牧牛訣	牧	목우	목우	목우

‘유’와 ‘한’은 ‘목우자수심결언해’를 ‘목우자수심결’로 하였다.

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

몽법	몽산	蒙	蒙法	蒙法	蒙	몽산	산	몽산
----	----	---	----	----	---	----	---	----

‘몽’으로만 하면 ‘몽어유해’ 등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몽해’ 정도가 무난할 것이다.

蒙語老乞人	*	*	*	蒙老	*	蒙老	*	*	몽노
蒙語類解	*	*	*	蒙語	*	蒙類	몽해	몽어류	몽해
蒙語類解補	*	*	*	蒙語補	*	蒙補	몽해보	몽어보	몽보

‘한’과 ‘홍’은 ‘몽어유해보’를 ‘蒙語類解 補篇’이라 했다. ‘몽어’로 시작하는 세 책을 변별하려면 ‘몽노, 몽해, 몽보’가 무난하다.

武藝圖譜通志彌解	*	*	*	武藝	武藝圖譜	武藝	무도	무예	무예
物名考(유희)	*	*	物名	物名	*	柳物	물명	*	물명유
物名考(다산)	*	*	*	茶山物名考	*	*	*	*	물명정
齊諧物名考	*	*	*	*	齊諧物名考	*	*	제해	제해

‘유’는 ‘물명고’(유희)를 저자인 ‘柳僖’의 성을 밝혀 ‘柳氏物名考’를 원저명으로 하고 ‘유물’로 약호를 삼았는데 유희와 정약용을 구별하려면 ‘유’와 ‘정’을 변별함이 좋을 것이다.

物譜	*	*	*	*	物譜	物譜	물보	*	물보
翻譯老乞大	번노	*	翻老	翻老	*	*	노번	로결대	번노
翻譯朴通事	번박	翻譯朴通事	翻朴	翻朴	初朴通事	朴초	박번	박통사	번박

‘번역노결대, 번역박통사’를 ‘안’은 ‘번노, 번박’으로 했는데, ‘한’은 ‘노번, 박번’으로 정반대 약호를 보여 대조적이다. ‘유’에서는 당시 ‘이조어사전’이 나오던 시기에 ‘번역노결대’가 아직 미공개되어서 반영되지 않았다.

老乞大彌解	노걸	老乞人彌解	老乞	老乞	老解	老	노해	로결언	노언
朴通事彌解	박통	朴通事彌解	朴通	朴通	朴解	朴重	박해	박통언	박언

‘유’와 ‘허’는 초간인 ‘번역박통사’와 중간인 ‘박통사언해’를 각각 ‘朴通事彌解初刊’과 ‘朴通事彌解重刊’식으로 하였고 ‘남’은 각각 ‘초간본 박통사언해’와 ‘박통사언해’로 불렀다.

重刊老乞大彌解	*	*	*	老乞重	*	*	중노	*	중노
朴通事新釋彌解	*	*	*	朴新	朴新解	朴新	박신	*	박신
般若心經彌解	*	심경	반야심경	*	心經	心經	心	반야	반야

‘유’는 ‘반야심경언해’를 ‘심경언해’로, ‘한’은 ‘반야 바라밀다 심경 약소’로, ‘남’은 ‘반야바라밀다심경언해’로 했다. 약호를 ‘반야’로 하면 ‘금강경삼가해’를 말하는 ‘금강반야바라밀경삼가해’나 ‘금강경언해’라고 하는 ‘금강반야바라밀경육조해’

에 ‘반야’가 들어가 있어 혼동할 우려가 있어 ‘심경’ 쪽이 무난하다.

불교	*	*	*	*	*	발교	*	*	발교
發心修行章	*	*	發心	*	*	發心	발심	*	발심
方言類釋	*	*	*	方言	*	*	*	*	방유
百聯抄解	백련	*	百聯	百聯	百聯解	百聯	백련	백련	백련
譏譯小學	번소	*	*	譏小	譏小	번소	*	번소	번소
法華經諺解	법화	법화	法	法華	法華	법화	*	법화	법화

‘허’는 ‘법화경언해’를 ‘묘법연화경언해’, ‘복’에서는 ‘묘법련화경언해’라고 하였다.

法集別行錄節要諺解

별행	*	*	*	*	*	별행	*	*	별행
辟爐方	*	*	*	*	辟爐方	辟爐	벽방	벽온방	벽온

‘유’는 ‘벽온방’을 ‘벽온방언해’로 하였다.

辟爐新方	*	*	*	辟爐	辟爐新方	辟新	*	벽온신	벽신
辟爐新方(목판본)	*	*	*	*	*	벽신-목	*	벽신목	벽신목
辟爐新方(활판본)	*	*	*	*	*	벽신-활	*	벽신활	벽신활
兵學指南	*	*	*	*	兵學指南	兵指	*	병학	병학
兵學指南(초간)	*	*	*	*	*	병학-초	*	병학초	병학초
兵學指南(중간)	*	*	*	*	*	병학-중	*	병학중	병학중
普通學校									
學徒用國語讀本	*	*	國語	*	*	*	*	*	국어
普通學校修身書	*	*	修身	*	*	*	*	*	수신
浮談	*	*	*	*	*	浮談	*	*	부담
分門醫疫解方	분온	*	分門	分爐	瘟疫方	분온	분문	분문	분온
佛頂心經	불정	佛頂心經	觀	佛頂	佛頂	觀	불정	불정	불정

‘의’과 ‘유’는 ‘불정심경’을 ‘관음경언해’로 하였다. 이 책은 안병희(1992:119)에서 거론된 대로 ‘불정심경’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은 ‘불정심다라니경’, ‘조’는 ‘불정심다라니경언해’으로 하였다.

四法語_{説解} * * * 四法語 法語 * * * 사법

‘남’에서는 책명을 ‘사법어’로 하였다. 여기서는 안(1992:518)에 따라 ‘사법언해’로 하였다.

四聲通解(중간본) * 四聲通解 * 四聲 四海 四解 사해-중 사성·해 사성

‘한’은 서명을 ‘사성통해(중간본)’로 잡았다.

三綱行實圖 삼강 * * 三綱 三綱 三강 삼강 삼강 삼강
三綱行實圖(중간본) * * 三綱重 重三綱 * 삼강-중 * 삼강중

‘한’에서는 초간본으로 보이는 것을 ‘삼강행실도(초간?)’으로 하여 초간본 여부에 회의적이다. 그러나 안(1992:523)에서는 성암문고 소장본을 원간본으로 본 바 있다.

續三綱行實圖 * 繼三綱行實圖 * 繼三綱 繼三綱 속삼 속삼 속삼 속삼
(초간본?)

續三綱行實圖 * * * * * 속삼-중 * 속삼중
(중간본)

五倫行實圖 * * * 五倫 五倫 오륜도 오륜 오륜

‘남’은 ‘오륜행실도’를 ‘오륜행실도언해’로 하였다.

二倫行實圖(초간) 이륜 * 二倫 二倫 二倫 二倫 이륜-초 이륜 이륜
二倫行實圖(중간) * * * 二倫重 * * 이륜-중 * 이륜중

三國史記	*	*	*	*	三史	*	*	3사*	사기
三國遺事	*	*	*	*	三遺	*	*	3유*	유사
三壇施食文	시식	*	*	施食	施食	*	삼단	*	시식

‘三壇施食文’(판심 서명: 施食)은 ‘眞言勸供’(판심 서명: 供養)과 합본된 것으로 안병희(1992:261, 285 주 4)에서는 이들을 하나의 書名으로 부른다면 ‘施食勸供(謬解)’이나 版心題를 합해 ‘供養施食(언해)’이라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최현배(1942, 1961:138-9)에서 말한 ‘공양시식문언해’도 타당하다고 하였는데 안병희 교수는 ‘시식권공(언해)’으로 부른다고 하였다. ‘남’은 ‘삼단시식문’을 ‘공양시식문’으로 부르고 ‘진언권공’은 따로 두었다.

三譯總解	*	*	*	三譯	*	三譯	삼역	삼역	삼역
------	---	---	---	----	---	----	----	----	----

원간본이 不傳하므로(안병희 1992:533-4) 중간본이 대상이 된다.

上院寺御牒	*	상원사권선문	*	*	上院寺勸善文	上院牒	오대산	오대	상원
-------	---	--------	---	---	--------	-----	-----	----	----

‘안’은 ‘上院寺御牒·同重創勸善文’(안병희 1992:513)이란 제목을 달았고 ‘한’은 ‘오대산 상원사 중창 권선문’이라 하였으며 ‘유’, ‘조’는 ‘五臺山上院寺御牒’으로 하였다.

書傳謬解	*	*	*	*	書解	書언	서해	*	서언
釋譜詳箇(초간)	석상	석보	釋	釋祥	釋譜	석	석보	석보	석상
釋譜詳箇(중간)	*	*	*	*	*	*	석보·중	*	석상·중
禪家龜鑑	*	선귀	禪	禪龜	龜鑑	龜	선가	선가	선귀

‘유’는 ‘선가귀감’의 책명을 ‘선가귀감언해’로 하였다.

宣祖國文片紙	*	*	*	*	*	*	*	선조	선조
禪宗永嘉集謬解	영가	영가	永	永嘉	永嘉	永嘉	선집	*	영가

‘안’, ‘의’은 ‘선종영가집언해’, ‘유’는 ‘영가집언해’, ‘한’은 ‘선종영가집’으로 하여 다르다.

世宗實錄地理志	*	*	*	*	*	*	*	*	자리지*	자리지
紹修書院臘錄	*	*	*	*	*	*	*	소수	소수	소수
小兒論	*	*	*	*	小兒論	小兒	소아	*	소아	
小學諺解	소언	*	小學	小諺	小解	小언	소해	소학	소언	
御製小學諺解	*	*	*	*	*	御小	어소해	*	어소	
續美人曲	*	*	*	*	*	*	*	속미인	속미인	
松江歌辭	*	*	*	*	松江	松江	*	송강	송강	
松江歌辭(관서)	*	*	*	*	*	*	*	송강-관	*	송관
松江歌辭(성주)	*	*	*	*	*	*	*	송강-성	*	송성
松江歌辭(이선)	*	*	*	*	*	*	*	송강-이	*	송이
修善曲	*	*	*	*	*	修善曲	*	*	수선	
詩經物名諺解	*	*	*	*	*	詩物	*	*	시물	
詩經諺解	*	*	*	*	詩解	詩언	시해	시해	시언	
時用鄉樂譜	*	*	*	*	*	時用	시용	시용	시용	
新刊增補三略直解	*	*	*	三略	三略	三略	신삼략	삼략	신삼	

‘유’는 ‘增補三略直解’로 하였고 ‘한’은 ‘신간 증보 삼략 칙해/삼략 칙해’로 병기하였으며 ‘남’은 ‘삼략언해’로 했다. 그런데 ‘유’의 해설에 따르면 ‘신간증보 삼략칙해’와 다른 언해본으로 ‘신간증보삼략’이란 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하므로 단순히 ‘삼략’으로만 하면 이 두 가지를 변별하기 어려워 혼동하기 쉬운 점도 있다.

新傳煮硝方諺解	*	*	*	煮硝	煮硝方	煮硝	*	자초	자초
新傳煮取焰硝方諺解	*	*	*	焰硝	*	*	*	*	염소

전술한 대로 ‘신전자취염소방언해’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신전자취염초방언해’로 잘못 적고 있는데 두산동아에서 나온 《동아세계대백과사전》에도 잘못 나와 있다.

新增東國園地勝覽

* * * * * * 신동락 신중(승합) 술락

북한 자료에서도 자료마다 약호가 틀린 경우가 있다. 가령 조선말대사전의 '신중'도 '류열'에서는 '술립'으로 나온다.

‘한’에서는 ‘불설아미타경/아미타경’의 두 가지를 병기하였고 ‘남’은 ‘불설아미타경언해’로 하였다.

雅言覺非	*	*	*	*	雅言	雅言	*	아언	아언
樂學軌範(초간)	*	*	*	*	樂範	樂軌	악학 초	악학	악학초
樂學軌範(중간)	*	*	*	*	*	*	악학 중	*	악학중

‘유’는 ‘악학궤범’을 초간과 중간으로 구별하였다.

樂章歌詞 * 樂章歌詞 * * 樂章 樂音 악장 중 악장 악장

‘학’은 ‘악장가사(중간)’으로 한였다

野雪自警隊 * * 野雪 * 野牛 野猪 야우 야우 야우

'익'에서는 세 권의 책이 합본된 원명대로 '계초심학인문', '발심수행장', '야운자경서'를 묶어 예시하고 약호는 '계초', '발심', '야운'으로 하였는데 '유', '한', '조'는 세 권을 따로 제시하고 '야운자경서'(약칭 '야운자경', '자경문')는 '야운자경'으로 하였다.

語錄解	*	*	*	語錄初	語錄	語錄	어해-정	어록	어록
(정양, 초간본)									
語錄解	*	*	*	語錄改	*	*	어해-남	어록	어록
(남이성, 개간본)									

'어록해'는 鄭儀의 것과 이를 증보한 南二星의 것이 있어 '한'에서는 이를 구별하였는데 '유'는 이를 구별하지 않았다. 그런데 '유'에는 '어록해'의 약호가 '吏語'로 된 것도 있는데 어느 것을 가리키는지 불확실하다.

於于野談	*	*	*	*	於于	*	*	*	어우
御製常訓諺解	*	*	常訓	常訓	*	常언	여상훈	*	여상
諺解救急方	*	*	*	*	*	*	救언	이	연구

'구급방언해'와 '언해구급방'은 다른데 '언해구급방'을 '유'가 '救언'으로 한 것은 '구급방언해'의 약호로 혼동하기 쉽다.

諺解痘瘡集要	*	*	痘瘡	痘瘡	痘瘡集要	痘要	언두	두창집	언두
--------	---	---	----	----	------	----	----	-----	----

'유'는 '두창집요'로만 하였다.

諺解胎產集要	*	*	胎產	胎產	胎產集要	胎要	언태	태산	태산
女四書諺解	*	*	女四書	女四	女四解	女四	여사	녀사	여사
呂氏鄉約諺解	*	*	呂氏	呂氏	呂約	呂約	*	려씨	여씨
朱子增損呂氏鄉約(일본 존경각)	*	*	*	*	*	*	주여씨-존	*	여존
朱子增損呂氏鄉約(일석)	*	*	*	*	*	*	주여씨-일	*	여석
朱子增損呂氏鄉約(화산문고)	*	*	*	*	*	*	주여씨-화	*	여화

'한'에서는 '주자증손여씨향약'의 여러 이본을 구별하였는데 약호가 긴 편이다.

그리고 ‘주자증손여씨향약’은 중국 원서의 이름도 그러하므로 언해본은 ‘언해’를 붙임이 좋을 것이다.

女訓譯解	*	*	*	女訓	*	*	*	*	여훈
譯語類解	*	譯語類解	*	譯語	譯解	譯	역해	역어류	역어
譯語類解補	*	*	*	譯語補	*	譯補	역보	역어보	역보
練兵指南	*	*	*	練兵	*	練兵	연병	련병	연병
念佛普勸文	*	*	*	*	普勸文	普勸	염보	님불	염불
念佛普勸文	*	*	*	念佛	*	*	*	*	염용
(용문사판)									
念佛普勸文	*	*	*	念佛	*	*	*	*	염해
(해인사본)									
念佛普勸文	*	*	*	念佛桐華寺本	*	*	*	*	염동
(동화사본)									

‘염불보권문’에 대해 ‘유’는 명확한 판본 표시가 없는데 사전 뒤의 해설에 보면 해인사본 刊年과 같아 해인사본을 이용한 듯하다. ‘한’에도 다른 자료들은 판본을 밝혀 구별하면서 이것은 판본 표시가 없다. 판본 구별은 ‘홍’에서만 하고 있다.

念佛普勸文附篇

*	*	*	*	*	普附	*	*	염부
靈驗略抄	영험	靈驗略抄	*	靈驗	靈驗	靈驗	영험	영험

五倫行實圖 ⇒ ‘삼강행실도’를 가 보라.

五倫全備諺解	*	*	*	五倫全	*	*	*	*	오전
王郎返魂傳	*	*	*	*	王郎傳	王返	왕랑	왕랑	왕랑
倭語類解	*	*	*	倭語	倭解	倭語	왜어	*	왜어
要路院夜話記	*	*	*	*	*	要路	*	*	요로
龍飛鶴人歌	용가	용	龍	龍歌	龍歌	용	용가	룡비	용가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	*	*	*	牛疫方	牛方	*	우마	우마

牛馬羊豬染疫病治療力(초간)

*	*	*	*	*	*	*	*	우마-초	*	우초
牛馬羊豬染疫病治療力(중간)										
*	*	*	*	*	*	*	우마-중	*	우중	

‘한’은 초간본과 중간본을 구별하였다.

圓覺經譏解 원각 원각 圓 圓覺 圓覺 圓 원각 원각 원각

안병희(1992. 120-1)에서의 지적처럼 ‘원각경’의 경우 ‘원각경언해’와 ‘원각경구결’이 따로 있으므로 이들을 구별할 때는 ‘원언’이나 ‘원구’로 구별할 필요도 있다.

月印釋譜 월석 월석 月釋 月釋 월석 月 월석 월석 월석

‘조’에서는 불필요하게 ‘월인석보’의 약호에서 ‘월’과 ‘석’사이에 가운데점을 찍었다.

月印千江之曲	월인	천강곡	千江	月千	月印	曲	월곡	월·천	월천
綸音	*	*	*	*	*	綸音	*	*	윤음
斥邪輪音	*	*	斥邪	*	*	*	*	*	척윤
諭京畿大小民人等綸音									
*	*	京畿	京畿大綸	*	*	*	*	*	경윤
御製戒酒綸音	*	*	戒酒	戒酒綸	*	*	*	*	계윤

綸音은 여러 종류의 윤음이 현전하는바 필요에 따라 적절히 원 제목과 약호를 명시하여 인용해야 할 것이다. 가령 ‘익’과 ‘홍’이 여러 종류의 현전하는 윤음 중에서 ‘諭京畿大小民人等綸音’을 서로 달리 한 것도 그런 결과이다.

幼年必讀	*	*	幼年	*	*	*	*	*	유년
儒胥必知	*	*	*	*	儒胥	儒胥	*	유서	유서

類合(선암사판)	*	*	*	禪類合	*	*	*	*	유선
類合(송광사판)	*	*	*	松類合	*	*	*	*	유송
類合(칠장사판)	*	*	*	七類合	*	*	*	*	유칠
新增類合	유합	*	*	유합	類合	類合	신합	류합	신합

‘의’(1992:64)에서는 ‘신증유합’을 거명만 하고 약호는 게시하지 않았으며 이의 섭(1992:222)의 본문에서도 원 책명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런데 ‘유합’은 ‘유합’과 ‘신증 유합’이 다른바 이들을 변별하는 약호가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유합’과 ‘신증유합’은 각각 ‘유합, 신합’ 또는 ‘유합, 유합-신’처럼 변별 할 필요가 있다.

六祖法寶壇經譯解

육조 육조 六祖 六祖 六祖 六祖 육조 육조 육조

‘한’은 책명을 ‘육조대사법보단경’으로 하였다.

恩重譯解 *

* 恩重 恩重 恩重 은중 은중 은중

‘안’은 ‘부모은중경언해’로, ‘한’은 ‘佛說人報父母恩重經’으로 하였다.

意幽堂日記 *

* 意幽堂 * * 의유

二倫行實圖 ⇒ ‘삼강행실도’를 가 보라.

吏讀 *

* 更讀 * * 이두

‘유’는 단순히 ‘이두’로만 했지만 이두 자료가 다양하므로 구체적 인용에서는 세부 명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유’는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에 나오는 이두 80여개를 ‘吏讀方言’으로 따로 지칭했는데 책명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이 수록된 책 이름은 따로 밝혀야 할 것이다.

吏讀集成 *

* 集成 * 리두집 이집

吏讀便覽 *

* 便覽 * 리두편 이편

吏讀方言	*	*	*	*	*	吏方	*	리두방	이방
易言	*	*	*	易言	*	*	*	*	이언
因果曲	*	*	*	*	*	因果曲	*	*	인과
隣語大方	*	*	隣語	隣語	*	隣語	*	린어	인어
日東壯遊歌	*	*	*	*	*	日東	일동	*	일동
字類註釋	*	*	*	字類	*	*	*	*	자류
字恤典則	*	*	字恤	字恤	字恤	字恤	자흘	자흘	자흘
才物譜	*	*	*	才物譜	才物譜	才物	*	재물	재물
奧律通補	*	*	*	*	*	吏文	*	전률	전률

'유'는 '전율통보'의 약호를 '吏文'으로 했는데 이는 이 문헌이 '이문' 관련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병희 교수의 소개로 '吏文大師'라는 이문 자료도 따로 발견되었으므로 '이문대사'의 약자를 '이문'으로 할 수도 있고 '전율통보'의 약호를 '이문'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 吏文에 대해서는 안병희(1991 7:408-437) 참고.

正俗諺解	*	正俗諺解	*	正俗	正俗	正俗	*	정속	정속
正俗諺解	*	*	*	*	*	*	정속-초	*	정초
(초간?)									
正俗諺解	*	*	*	*	*	*	정속-규장	*	정규
(규장각)									
正俗諺解	*	*	*	*	*	*	정속-일사	*	정사
(일사문고)									
正俗諺解	*	*	*	*	*	*	정속-중	*	정중
(중간?)									

'한'은 정속언해 초간본에 대해 '정속언해(초간?)'으로 표시했다.

濟衆新編	*	*	*	*	濟衆	*	제중	제중	제중
朝鮮館譯語	*	*	*	*	譯語	*	*	조선관	조역
朝鮮語辭典	*	*	*	*	*	朝鮮	*	*	조사

‘유’는 조선총독부에서 낸 ‘조선어사전’을 ‘조선’이라 하였는데 ‘문세영’의 ‘조선어사전’과 변별할 필요가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 ‘남’에서 ‘조선관역어’를 ‘역어’로 한 것은 ‘역어유해’와 혼동할 우려가 있다.

種德新編諺解	*	*	種德	種德	*	*	*	*	*	종덕
左捕盜廳錄	*	*	*	*	*	*	좌우	좌우	좌우	좌우
左捕盜廳錄	*	*	*	*	*	*	좌포	좌포	좌포	좌포
右捕盜廳錄	*	*	*	*	*	*	우포	우포	우포	우포
周易諺解	*	*	*	周解	周解	周언	주해	*	*	주언
中庸解	*	*	中庸	庸解	中庸	중언	중해	*	*	중언
增補文獻備考	*	*	*	*	增補文獻備考	*	*	비고*	*	비고
增修無冤錄諺解	*	*	*	無冤	無冤錄	무冤	증무원	무원	무원	증무원
地藏經諺解	*	*	*	地藏	地藏解	지장	지장원	· 중	*	지장

‘한’에서는 ‘지장보살본원경언해’로 하였다.

眞言勸供	권공	*	*	勸供	眞言勸供	勸供	진공	진언	진언
------	----	---	---	----	------	----	----	----	----

‘진언권공’과 ‘삼단시식문’은 합체 목활자본으로 ‘시식권공’으로 약칭된다(안병희 1992:530). ‘유’에서는 사전 앞의 범례에는 빠졌으나 뒤의 해설에는 나온다. ‘유’에서는 ‘三壇施食文’은 따로 나오지 않는다. ‘안’이나 ‘한’은 ‘진언권공’과 ‘삼단시식문’이 모두 나온다. ‘남’은 ‘삼단시식문’을 ‘공양시식문’으로 부르고 ‘진언권공’은 따로 두었다.

參禪曲	*	*	*	*	參禪曲	參禪曲	*	참선	참선
-----	---	---	---	---	-----	-----	---	----	----

‘남’에서는 책명을 ‘八陽經附參禪曲’이라 하였다.

瘡疹方諺解	*	*	*	*	*	瘡언	*	*	*	창언
闡義昭鑑諺解	*	*	闡義	闡義	*	*	*	*	*	천의
石峰千字文	*	*	*	*	*	석봉	천자- 석	석·천자	석천	

千字文(광주판)	*	*	*	光千	*	*	천자-광	*	광천
千字文	*	*	*	*	*	*	천자-궁	*	궁천
(일본 궁내청 서릉부)									
千字文	*	*	*	*	*	*	천자-대	*	대천
(일본 大東急 기념문고)									
千字文(송황사판)	*	*	*	松千字	*	*	*	*	송천
千字文(찰봉사판)	*	*	*	七千字	*	*	*	*	칠천
歷代千字文	*	*	*	歷千	*	*	*	*	역천
註解千字文	*	*	*	*	*	*	주-천자	*	주천
千字文	*	*	*	*	千字	*	*	*	천자

‘유’는 ‘석봉 천자문’만 언급하였다. ‘한’은 일본 궁내청 서릉부의 이본은 언급하였는데 일본 내각문고본의 여러 이본(안병희 1992L: 448)은 예시하지 않았다. ‘홍’은 光千, 壓千 식으로 2음절로 하면서 송광사본만은 ‘松千字’로 3음절을 하여 불균형하다. ‘남’은 판본 설명 없이 ‘천자’라고만 하였다.

捷解蒙語 * * * 捷蒙 * 捷蒙 첨몽 첨해몽 첨몽
 捷解新語 첨신 * 捷解 捷解 新語 新語 첨신 첨해신 첨신
 改修捷解新語 * * * 改捷 * * 개첨신 * 개첨
 重刊改修捷解新語 * * * 重改捷 新語重 * 중첨신 * 중첨

'한'은 '중간첩해신어'로 서명을 달았고 '홍'은 '중간개수첩해신어'로 했다.

‘한’에서는 ‘청구영언’(吳氏本: ‘吳氏’는 呉章煥)을 ‘청구영언(원본)’이라 하고 대학본을 ‘청구영언(경성제국 대학)’이라 하였다. ‘유’의 ‘이조어사전’에는 출전된 책명들을 밝히면서 여러 이본의 종류를 ‘이조어사전’ 뒤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데 정작 사전 앞 부분에 제시한 범례에서는 이본들을 거의 밝히지 않고 책명 중심으로만 밝히고 단 세 곳만 이본 표시한 것을 보여 준다. 그것이 바로 모두 이 ‘청구영언’에 대해서다. 전술한대로 다른 이본들은 밝히지 않으면서 이것만 밝힌 것이 특이하다. ‘이조어사전’의 경우처럼 이본들의 경우에 앞 글자는 책 머릿글자를 적고, 뒷 글자는 소장자 약호를 밝히는 방법도 도움될 것이다. ‘유’에서 ‘青丘歌謡’라는 문헌도 올라 있는데 ‘이조어사전’의 해설 부분에는 나오지 않아 어떤 문헌인지 불명확하다.

青丘歌謡	*	*	*	*	*	青丘	*	*	청가
青邱野談	*	*	*	*	*	青談	*	청담	청담
淸語老乞人	*	*	*	*	*	淸老	*	청어	청노
淸語老乞人新釋	*	*	*	*	*	*	청노신	*	청신

‘유’(1964:828)에서는 ‘청어노걸대’(숙종 29, 1703)와 ‘청어노걸대신석’(영조 41, 1765)을 구별하면서 ‘청어노걸대신석’을 그 사전에서는 인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처럼 ‘청어노걸대신석’을 앞의 범례에서는 ‘청어노걸대’라고만 표시하여 출전에서 혼동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 둘은 엄밀히 나누어야 하는 바 ‘청어노 걸대신석연해’는 ‘청노신’이나 ‘청신’이란 약호처럼 구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村家救急方	*	*	*	村家	村方	*	*	*	촌구
推案及鞠案	*	*	*	*	*	*	*	*	추안
七大萬法	*	七大萬法	*	七大	七大	七大	칠대	칠대	칠대

‘익’은 ‘칠대만법’을 거명만 하고 약호는 제시하지 않았다.

太上感應篇圖說諺解

* * 感應篇 * * * * * 태상

太平廣記 講解 * * * * 太平廣記 太平 태평 태평 태평

'한'에서는 책명을 '태평광기'로 하였다.

八歲兒 *	*	*	*	*	八歲兒	八兒	팔세	팔세	팔세
閑中錄 *	*	*	*	*	*	閑中	*	*	한중
漢清文鑑 *	*	*	漢青	漢清	漢清文鑑	漢	한청	한청	한청

'한'에서는 '한청문감/한한청문감'처럼 두 가지 책명으로 하였다. '남'은 후자를 책명으로 하였다.

海東歌謡 *	*	*	*	*	海東	海東	해가 *	*	해동
海東歌謡 *	*	*	*	*	*	*	해가-박 *	*	해박
(박영돈본)									
行用吏文 *	*	*	*	*	*	行吏	*	행용	행리
華語類抄 *	*	*	*	*	華類	華語	*	화어	화어
華音啓蒙謹解 *	*	*	*	*	華解	華언	*	화음계	화음
火砲式謹解 *	*	*	*	火砲	火砲解	火砲	화포	화포	화포
孝經謹解 *	*	*	孝經	*	孝經	孝언	*	효경	효언
訓民正音 *	훈, 해례	訓	訓民	訓民解例	解例	훈민-원	훈민(해)	해례	(解例本)
訓民正音解	훈언	훈, 언해	*	訓謬	訓民註解	訓謬	세훈민	훈민(언)	훈언
訓民正音例義 *	*	*	*	*	*	正音	*	*	예의

'한'은 서명에 대해 해례본을 '훈민정음(원본)'으로 하고 '훈민정음언해'를 '세종어제훈민정음'으로 하여 후자는 '세훈민'으로 길게 하였다. 그런데 '유'는 '훈민정음해례'와 '훈민정음 언해'를 두고 다시 '훈민정음 예의'를 불필요하게 따로 두었다. '남'도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주해본' 외에 따로 '훈민정음'을 두었다.

訓蒙字會(초간) 자회	자회	*	*	訓蒙	字會	훈몽-초	훈몽	자회	
(중간)	*	*	*	*	*	*	훈몽-중	*	자회중

‘안’은 초간본을 ‘훈몽자회’로만 하였고 ‘한’은 이를 구별하였다.

5. 맷음말

우리는 지금까지 옛글의 인용법을 완전 인용, 생략 인용, 가필 인용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옛글의 인용에서는 완전 인용이 가장 이상적이되 필요에 따라 생략 인용이나 가필 인용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완전 인용은 오자, 탈자, 미판독자 등도 그대로 드러내놓는 인용이며 이 때 오자, 탈자, 미판독자 부분을 보이기 위한 부호를 사용할 수 있으니 [Sic] 또는 [원문 그대로]와 같은 표시를 할 수 있고 [‘~’은 ‘~’의 오자] 또는 [‘~’의 오자]처럼 표시할 수도 있다.

생략 인용시에 쓰는 생략점은 서구식으로 된 3점 마침표 찍기(...)가 자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수 문자를 번거롭게 불러 표시해야 하는 현행 줄임표(……) 방식보다 권장할 만하다. 가필 인용의 경우는 가필 부분을 [] 표로 하여 구별함이 좋다. 또한 협주 표시도 [] 안에 함이 특수 문자로 불러야 하는 [] 표 방식보다 컴퓨터에 의한 문서 편집상 편리하다고 보았다.

卷次와 張次와 面次의 표시는 ‘석보상절 6권 21-1’이나 ‘석보상절 6:21-1’과 같이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 표기 ㄱ,ㄴ으로 구별함이 실용적임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도 고문헌 인용에서 중요한 것이 고문헌의 서명과 약호 문제로 학계에서 이에 대한 통일된 인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주요 사전과 논저에 쓰인 양상을 국어학 관련 저서를 바탕으로 대비하고 이미 이에 대한 선구적 논의를 베풀 바 있는 안병희(1992-1, 2)에 기대어 통일된 서명의 시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용시에 刊印本이나 소장자에 따른 여러 이본의 서지적 사항은 서명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명기하고 관련 논의들이 전개되어야 함도 강조하였다.

아울러 남북한 8종의 약호 방식을 비교하여 이를 상호간의 차이를 제시하여 보고 통일된 약호의 시안을 제시해 보았다. 무엇보다도 인용자에 의한 유통성은 최대한 살리되 인용 문헌에 대한 구체적 서지적 안내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사실만 준수된다면 고문헌의 부정확한 인용과 오독으로 인한 문제점은 한결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장황했던 논의를 '옛글 인용의 원칙'이란 규정문으로 요약하여 다음에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부록>-

옛글 인용의 원칙(요약)

인용법의 표준화는 국내 학계의 학문 내적 및 학문 상호간의 의사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제적 관계의 존중을 바탕으로 국내 학문의 국제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인용의 생명은 원전을 훼손시키지 않고 정확한 원전을 있는 그대로 인용함에 있다.
2. 옛글의 인용법도 현대 문헌의 일반적 인용법에 준한다.
3. 옛글 인용의 유형은 크게 完全 引用法(full quotation), 省略 引用法(elliptic quotation), 加筆 引用法(correctional quotation)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완전 인용법이란 원하는 인용 원문을 그대로 따오는 것이고, 생략 인용법은 인용문의 일부를 생략하고 따오는 것이며, 가필 인용법은 인용문에 인용자가 가필, 첨삭, 교정하는 것이다.

(1) 완전 인용법

옛글의 인용은 원칙적으로 완전 인용법을 지향하여야 한다. 인용 부분이 원문과 완전히 일치하도록 원문의 내용을 표기법과 구두점은 말할 것도 없이 오자(wrong letter), 탈자(missing letter), 미판독자(illegible letter),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소실된 글자꼴, 붙여쓰기나, 띄어쓰기까지 그대로 적어 인용해야 한다.

- ① 어구나 1~2행 미만의 짧은 내용의 문장으로 된 옛글을 인용할 경우는 본

문의 행 속에 '삽입 인용'을 하며 인용 부분은 대화문이나 비대화문이나를 불문하고 큰따옴표를 원칙적으로 사용한다. 단, 학문 영역에 따라 어구나 문장의 삽입 인용시 관례적으로 작은따옴표를 써 온 경우도 허용할 수 있다.

② 원문이 1,2 행 이상으로 길어지거나 독립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으면 본문의 행과 구별하여 '독립 인용'을 하며 인용 전후의 행을 1행씩 띄어 구별한다. 이 때는 따옴표가 불필요하다.

③ 현대문 인용과 옛글 인용이 뒤섞여 인용될 경우는 현대 어법과 다른 어구나 문장 바로 뒤에 원문 그대로 제시한 것임을 환기시키고자 '원문 그대로'(so, thus, in this manner)라는 뜻의 [Sic]라는 표시나 우리 말로 된 [원문 그대로]라는 표시를 밝혀 주어 옛글의 완전 인용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논의의 성격상 옛글의 완전 인용이 자동적으로 전제된 경우는 일일이 [Sic]나 [원문 그대로]라는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④ 논의의 성격상 원문의 완전 인용 후에 원전에 나타난 오자 옆에 []표를 하고 ['~'은 '~'의 오자] 또는 ['~'의 오자]처럼 밝힐 수도 있다.

⑤ 탈자의 경우는 '한글 맞춤법' 규정의 부록에 나오는 '문장부호 규정'에 따른다면 '빠짐표'인 □□□표를 써야 하는데 컴퓨터 자판에서 □ 표는 번거롭게 특수 문자 자판에서 불러 사용해야 하므로 그 대신 서구에서 탈자 표시에 쓰는 대괄호 []표를 [][][]처럼 표시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 이렇게 된다면 현행 문장부호 규정에서 빠짐표 □ 은 완전히 삭제해야 하며 대신 대괄호 [] 항목의 규정에는 빠짐표 기능을 추가 설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 표와 []표를 모두 빠짐표 기능을 위한 복수 부호로 용인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가급적 부호 통일의 목표가 다양성에 따른 혼란의 비능률을 제거하고 국제화 시대에 국제적 관례를 따를 필요도 크다는 점에서 서구에서 일반화된 것인 []를 단일 부호로 사용함이 좋을 것이다)

'한국 고전 용어 사전'(세종대왕 기념 사업회)에서는 탈자의 경우 ○○표를 쓰기도 하는데 현 문장부호 규정에서 ○○○나 ×××는 숨김표라 하여 빠짐표인 □와 구별해 쓰고 있으므로 적어도 ○○○나 ×××표는 탈자 표시에 쓰지 말아

야 할 것이다.

(2) 생략 인용법

생략 인용은 원문의 일부분, 가령 앞 부분이나 중간 부분이나 끝 부분을 빼고 필요한 부분만을 인용하는 것으로 이 때 생략된 부분은 줄임표(생략표, ellipsis dots)를 넣어 문장 일부가 생략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줄임표는 서구의 관례와 자판 사용의 간결성에 따라 ‘...’처럼 마침표를 내리 세번 찍도록 한다. 이는 국내에서 ‘한글 맞춤법’(1988)의 문장부호 규정에서 좁은 간격으로 된 6개의 가운데점 ‘……’을 반복해 표시한 것과 차이가 난다. 굳이 6개씩 적을 필요도 없고 현행 컴퓨터 자판에서는 번거롭게 이런 가운데점 6점을 특수 문자 자판에서 불러내어야 하므로 서구처럼 마침표 점을 3번 반복해 찍는 3점 방식이 바람직하다.

사람에 따라 줄임표를 []로 에워 싸서 [.....] 표를 쓰거나 생략의 줄임표를 하면서 ‘……(중략)……, (전략)……, ……(후략), ……(하략)’처럼 ‘전략, 중략, 후략, 하략’ 따위를 덧붙이기도 하는데 ... 표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이런 말을 굳이 쓸 필요는 없다.

(3) 가필 인용법

가필 인용은 인용자가 필요에 따라 인용문마다 다소의 가필을 하는 것으로 가필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마멸, 일부 잔존, 판독 곤란 글자는 □□□ 표, 탈자이거나 해어진 부분은 [] 표, 판독하거나 보충한 글자는 사각형 □ 표, 추측한 해독은 불완전하므로 () 표, 본문 필체와 다른 글씨가 쓰인 경우는 「 」 표, 고문서에서 붉게 쓴 글자가 있는 부분은 『 』 표, 朱印이 있는 경우는 ◎ 표, 글자를 쓴 후 말소한 문자는 “ ” 표를 한다거나 하여 여러 다양한 기호 사용을 해서 원문 인용의 사실성을 높일 수 있다. 단 이 때 사용하는 첨부 기호는 해당 학문 영역에서 쓰는 관례대로 하며 미리 범례에 밝혀 놓아야 한다.

그 밖에 한문 원문을 현대인이 알아보기 쉽게 띄어쓴 인용이나 한문 원문을 번역하는 인용, 그리고 붙여쓰기로 된 한글 고문을 원문 표기로 띄어 쓴 인용이

나 현대문으로 번역한 인용도 넓은 의미에서 모두 가필 인용이므로 미리 완전 인용이 아닌 가필 인용임을 밝혀야 한다.

(4) 협주 인용법

전통적으로 2행씩으로 된 협주의 인용도 원문 그대로의 모습으로 밝히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자판 작업이나 인쇄 과정시 번거로우므로 [] 안에 넣어 구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즉자히人入定^{명호}야펴^{잇던}발흘구필쓰^미예[설론주를너르니라]迦 강毗^비釋羅^라랑國^국에가아(석보상절 6: 27. []는 협주)

<참고> 문헌의 성격상 黑魚尾 【】 표가 쓰인 문헌(예: ‘楞嚴經諺解’ 따위)의 경우는 언해문과 구별하고자 협주가 시작되고 끝나는 곳에 【】 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 표를 사용하도록 한다.

4. 출전 표시법

(1) 고문헌 인용시는 출전 문헌에 대한 刊印本의 종류를 원칙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단, 학문 영역에서 당연히 초간본으로 인용되는 것이 주지된 경우는 刊印本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간행 시기에 따라 初刊本(=原刊本, 原板本, 祖板本)과 重刊本(=重刻本, 重影本)으로 나뉘며 인출시기에 따라 初印本(=初刷本)과 後印本으로 나뉘므로 가급적 이런 형태서지학적 사항을 書名 뒤에 첨부하여 밝혀 주어야 한다.

예1) 訓蒙字會(초간본) : 자회

訓蒙字會(중간본) : 자회중

예2) 警民編諺解(원간본은 부전) : 경민

警民編諺解(동경교육대학본=중간본) : 경민동 또는 경민중

警民編諺解(신역본, 개간본) : 경민신

警民編謬解(개간본의 상주, 전주, 남원 복각본) : 경민신중(상주), 경민신중(전주), 경민신중(남원)

(2) 고문헌의 출전 표시에서는 통일된 書名을 써야 한다. 고문헌의 서명은 동일한 책이라 해도 책의 여러 곳에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卷頭 書名’(=內題, 卷首題, 卷端題)을 서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혼동 우려가 있거나 동음어 서명에서 오는 오해를 막기 위해 차선책을 택할 수 있다.

<참고> 동일 서적이라도 서명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 ① 卷頭 書名(=內題, 卷首題, 卷端題) : 보통 이것을 代表 書名으로 한다.
- ② 卷末 書名(= 裏題, 尾題) : 권말에 쓰인 서명이다..
- ③ 目錄, 凡例 書名: 목록과 범례에 나타나는 서명이다.
- ④ 序文, 跋文 書名: 서문과跋문 첫머리에 나오는 서명이다.
- ⑤ 版心 書名(= 版心題) : 판심의 上下魚尾 사이에 쓰여진 이름이다.
- ⑥ 外題(表紙) 書名: 표지 바깥에 쓰인 서명이다.
- ⑦ 書根題: 책을 세웠을 때 바닥에 닿는 부분인 書根에 쓰인 이름이다.
- ⑧ 內賜記 書名: 책을 관료나 기관에 배포할 때에 앞 표지 안 쪽에 나오는 書名이다.

(3) 확정된 서명은 ‘갖은 이름’(具稱)이나 ‘줄인 이름’(略稱, 略號)으로 출전 표시를 하며 경우에 따라 문헌 성격상 ‘딴 이름’(別稱)으로 출전 표시를 할 수 있으나 가급적 ‘딴 이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줄인 이름’의 구체적인 원칙과 목록은 따로 다음 5항에서 정한다.

(4) 卷次, 張次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面次는 그, 뉴 방식으로 통일함을 원칙으로 하며 권차 표시는 ‘권’자를 생략하고 쌍점(:)으로 대용할 수 있다.

예) 석보상절 6권 21 ← = 석보상절 6:21 ←

<참고> 面次 표시를 a,b로 하는 것이 널리 퍼져 있으나 그 때마다 영문 자

판으로 자판을 전환하는 번거로움이 따르므로 자판 전환할 필요가 없는 그, 뉴 방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5) 인용의 필요에 따라서는 인용할 때에 같은 面次 내의 인용 위치를 앞 부분은 '가'로, 뒷 부분은 '나'로 안내해 줄 수 있다.

예) 삼국사기 권 제1 제6장 앞쪽~제7장 뒤쪽 신라본기 제1 유리 이사금까지 인용할 때의 출전 표시—삼국사기 1 : 6 가~7나 신라 1 유리 이사금

더 정확하게는 구체적 행을 밝혀 주어도 된다. 이 때는 서구에서처럼 line의 약자 l을 쓸 수 있으나 실제로는 영문자 l자의 사용이 자판 전환이라든가 시각상으로 아라비아 숫자 1과의 혼란 등을 초래하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예) 초간본 두시언해 7권 3ㄴ쪽 2행을 인용할 때의 출전 표시 - 두초 7:3ㄴ2

5. 고문헌 약칭(약호)법 - 국어학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

(1) 고문헌의 서명에 대한 표시는 필요에 따라 '갖은 이름'이나 '줄인 이름'을 사용한다.

(2) 약호는 1~2음절 방식을 이상적인 것으로 한다. 가령 '몽'이라 하면 '몽어 유해, 몽산화상, 몽어노결대' 등 여러 가지가 연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2 음절 약호로 하여 '몽해, 몽산, 몽노'로 변별케 한다.

(3) 이본 표시라든가 소장자 표시를 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약호 뒤에 추가 하여 3음절 약호를 허용한다. 예) 경민중, 경민신

(4) 현재 나와 있는 주요 8종의 약호 대비 용례중 가장 빈도높게 쓰이는 약호는 자동적으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빈도 높은 것이 그 동안 학계에서 비교적 많이 쓰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5) 표기는 한글 전용이 많아 한글 표기로 한 약호를 택한다. 예) 警民=> 경민

(6) 서명과 약호명의 시안은 앞의 본문에서 밝힌 목록을 참고한다.

참고문헌

- 고영근(1987),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 김영황(1993), 『중세 조선말 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 종합 출판사.
- 김완진(1980), 『향가해독법연구』(한국문화연구총서) 21, 서울대 출판부.
- 남광우(1960), 『고어사전』, 동아출판사.
- 남풍현(1993), <신라시대의 이두 자료>,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안병희 교수 희감기념논총), 문학과 지성사.
- 류 렐(1990), 『조선말력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민현식(1996), <‘동가월령가’에 대한 텍스트 언어학적 고찰>, 『문학과 언어의 만남』 (김완진 외 지음), 신구문화사.
-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1992), 『조선말 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서정수(1995), 『논리적인 글쓰기: 새로운 문장 강좌』 II, 정음문화사.
- 손희하(1997), 『국어사 연구와 서지학』, 『국어사연구』, 태학사.
- 안춘근(1990), 『한국 서지학 원론』, 범우사.
- 안병희(1979), <중세어의 한글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 『규장각』 3, 서울대 도서관(→1992-).
- _____(1982), <국어사 자료의 書名과 卷冊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7, 서울 대 국어국문학과(→1992-).
- _____(1992-), 『국어사 연구』, 문학과 지성사.
- _____(1992-), 『국어사 자료 연구』, 문학과 지성사.
- 유창돈(1964), 『이조어 사전』, 연세대 출판부.
- 이기문(1961, 1972), 『국어사 개설』, 탑출판사.
- 이병기(1957-1961), <한국서지의 연구>(상, 하), 『동방학지』 3, 5집, 연세대.
- 이익섭(1992), 『국어 표기법 연구』, 서울대 출판부.
- 이필영(1993), 『국어의 인용 구문 연구』, 탑출판사.
- 천혜봉(1977), <한국에 있어서의 서지학 전개 및 그 과제>, 『한국학보』 6·7, 일 지사.
- _____(1981), 『서지학개론』, 성균관대학교.
- 천혜봉(1991), 『한국 서지학』, 민음사.

- 최현배(1940, 1976), 『한글갈』, 정음사.
- 한국 고전 용어 사전 편찬 위원회 편(1991), 『한국 고전 용어 사전』 1,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 허홍식(1988), 『한국의 고문서』, 민음사.
- 허 응(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홍윤표(1993), 『국어사 문헌 자료 연구: 근대편』(1), 태학사.
- _____ (1994-), 『근대국어연구』(1), 태학사.
- _____ (1994-), <奎章閣 所藏 近代國語 文獻 資料의 綜合的研究>, 『한국문화』 15,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 池田溫(1979), <중국 고대 帳籍 연구>, 동경대학 동양문화연구소 보고.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1962, 1993), The Chicago Manual of Style(14th edition).